

# 일본 폭력조직의 실태와 대책

경감 정 승 호  
(경찰대학 교관)

## 〈目 次〉

### I. 개설

### II. 폭력단의 의의와 배경

1. 폭력단의 의의
2. 초기의 폭력조직
3. 2차세계대전 이후의 폭력조직
4. 최근의 폭력조직
5. 폭력단 대책법 성립 후의 폭력단 동향

### III. 폭력조직의 실태

1. 폭력단의 조직원리
2. 폭력단원의 실태

3. 지정 폭력단의 실태
4. 폭력단 활동의 국제화

### IV. 일본경찰의 대책과 추이

1. 폭력단 대책법 시행
2. 폭력단 종합대책 추진
3. 폭력단 대책법 및 폭력단 종합대책 추진 성과
4. 앞으로의 과제

### V. 결어

## I. 개설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불리는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는 그것이 좋은 나쁜던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회발전 양상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와 역

사적 문화적 배경상 공통점이 많은 나라이며 우리나라 보다는 사회발전 정도가 선진국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찰의 측면에서 보아도 현재의 우리나라 경찰의 직제와 활동 등 상당부분이 일본경찰과 유사한 점이 많으며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여러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중앙과 지방경찰의 조직구조, 외근경찰의 활동단위, 외근경찰의 활동내용, 경찰유관단체의 운영 등의 면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 과학수사의 정착, 지방자치경찰제도 확립,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성 회복 등은 우리가 추진 또는 지향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경찰에 대한 연구와 접근은 우리나라 경찰의 발전과 더불어 반드시 비교고찰해 보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범죄의 국제화 경향으로 국제공조수사와 국제범죄관련 정보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이미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어 외국인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고 외국과 관련된 범죄조직이 활개치고 있는 일본의 상황에 대한 접근은 앞으로의 상황대처에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일본의 폭력단은 이미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일본내에서도 확고히 뿌리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직폭력배의 근절과 색출, 그리고 외국 범죄조직과의 연계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 폭력단의 실태와 경찰의 대처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일본의 폭력단은 에도시대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그 규모와 조직도 꾸준히 변화되어 왔다. 2차세계대전후 10년 동안 폭력단원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1963년에 절

정에 이르렀으며 그 후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과 대처로 계속 감소하여 현재는 구성원과 준구성원을 합하여 약 9만여명이 넘는 실정이다. 심화되어가는 폭력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경찰은 1991년에 폭력단 대책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폭력단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단의 의의와 유래를 간단히 알아보고 현재의 폭력단의 구체적인 실태와 일본경찰의 대책과 그 추이를 살펴 보자 한다. 또한 본 연구서는 94년 필자가 참가한 일본경찰대학 주관 상급경찰간부 연수과정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자료를 종합하고 국내의 관련서적 및 연구보고서를 참작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 II. 폭력단의 의의와 배경

### 1. 폭력단의 의의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에는 야쿠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일본의 폭력단은 공식적인 명칭으로 야쿠자보다는 폭력단(보료구단)이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야쿠자」란 말은 본래 화투놀이에서 유래된 것으로 화투놀이를 하는 사람은 각기 화투 3장씩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합한 점수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으므로 3장을 합한 수가 20이 되면 0이 되어 최악의 점수가 된다. 그리하여 8-9-3을 갖게 되면 지게 되는데

이 숫자의 발음이 각각 「야」, 「쿠」, 「사 - 자」가 된다. 따라서 야쿠자의 의미는 「도움이 안된다」에서 「도움이 안되는 인간」, 「쓸모없는 인간」, 「가치없는 인간」이란 뜻으로 발전되어 최초에는 도박꾼인 博徒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이것이 점차 博徒뿐만 아니라 노천상인의 원조인 的屋과 거리의 청소년 불량배 집단인 遇連隊 등 반사회적인 집단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즉 2차세계대전후 이 세 집단간의 대립항쟁과 이합집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간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지면서 이러한 반사회적인 집단 또는 범죄조직을 총칭하는 의미로 야쿠자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야쿠자집단을 의미하는 언어로서 현재 「폭력단」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양자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구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폭력단이란 용어는 원래 경찰백서를 비롯한 경찰관련 보고서와 서적 및 공문에서 사용되어 오다가 최근 사회학 내지 범죄학상의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폭력단의 의의에 대해서 1991년 5월 15일에 제정·공포된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 77호)은 동법 제2조 2호에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적 불법행위를 행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단체”라 하고 있고, 동조 6호에서는 “폭력단원이란 폭력단의 구성원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이

렇게 볼 때 폭력단이란 조직이나 집단의 위력을 배경으로 하여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적 불법행위를 행할 위험이 있는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폭력단 범죄란 폭력단의 구성원에 의하여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적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1993년도 일본경찰백서에서는 폭력단에 대하여 “규모나 활동지역은 다르지만 대외적으로 조직의 위력을 배경으로 하고 또 그 위력을 이용하여 시민생활과 경제활동에 개입하여 위법부당한 자금획득활동을 행하며, 대내적으로 강한 조직통제를 행하는 것이 폭력단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할 폭력단을 「중점대상 폭력단」이라고 하고 폭력단의 구성원이 폭력적 불법행위를 반복해서 행할 위험성이 큰 폭력단을 지정해서 이를 「지정폭력단」이라고 한다. 폭력단의 구성원도 그 소속단체 내의 지위 또는 소속단체와의 관계에 의해 두목, 간부 및 조원으로 분류되며, 「준구성원」이란 구성원은 아니지만 폭력단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 조직의 위력을 배경으로 폭력적 불법행위 등을 행하는 자 또는 폭력단의 자금이나 무기를 공급하거나 그 조직유지, 운영에 협력 또는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 2. 초기의 폭력조직

일본초기의 폭력조직은 18세기 일본 봉건시대의 전통적 도박꾼인 바쿠도와 행상인들인 데키야들이었다. 아울러 청소년 범죄집단인

구렌타이도 초기 폭력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바쿠토(博徒)는 원래 길거리의 노름꾼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도쿠가와 시대에 각종 관개 및 토목공사장을 중심으로 성행하기 시작한 노름판에서 형성된 폭력조직이다. 정부 관리와 지방유지들이 노무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이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방법으로 노름꾼들을 고용하여 노무자들과 도박을 시켰는데 이 노름꾼들은 점차 수공업자, 사무라이, 스모선수 등 다양한 사람들로 늘어 갔다. 이들이 점차 조직화 되면서 마침내 일본 범죄조직의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데키야(的屋)는 옛날 시골장터를 돌아 다니며 풍물놀이와 간단한 쇼를 보이며 허위상품을 파는 행상인에서 출발하였다. 이 집단이 점차 커지고 조직화되면서 행상인 집단간에 자신들의 이익추구와 보호를 위하여 오야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조직을 결성했다. 조직내 는 봉건적 신분제의 오야붕, 부두목, 조장, 꼬붕, 견습생의 계급체계가 생겼다. 한 조직은 그들만의 지역권을 가지며 그 안의 가게로부터 사용료와 보호세를 받아 이 체제에 반대하는 영업주나 상인은 폭행을 당하거나 손님의 출입을 방해받는 등 영업행위를 불가능하게 했고 오야붕 사이에는 영역권을 둘러싼 패싸움이 일어났다. 18세기 중엽 도쿠가와막부는 증가하는 상습사기와 집단폭행을 막기 위하여 상당수의 오야붕을 채용, 감독자로 정함으로써 데키야의 활동을 양성화 시켰다. 데키야는

중소도시의 성장과 함께 합법적인 신분이 보장되어 그 세력이 확장되었다.

구렌타이(愚連隊)는 비행청소년 집단으로 주로 소매치기, 날치기, 등을 하는 절도조직이었다가 2차세계대전후부터 본격적으로 폭력조직화 되었다. 비행청소년들은 행인들을 희롱하거나 소규모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배로 출발하여 점차 구렌타이화 하여 일본 전역의 폭력집단으로 변화하였다.

### 3.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폭력조직

2차 세계대전후의 혼란기를 틈타 지하세계의 조직범죄 영역이 확장되면서 바쿠토, 데키야, 구렌타이가 표면적인 갈등 및 연대를 계속하여 구렌타이는 바쿠토나 데키야에 합세하거나 그들의 범죄수법을 모방하게 되었으며, 바쿠토와 데키야도 구렌타이와 같이 활동영역을 확장하였다. 이리하여 3개 유형의 집단형태는 상호 희석되어 이 세 유형을 전체적으로 명명하는 '폭력단'이란 명칭이 폭넓게 사용되었다. 이들 조직은 지하경제와 필로폰의 거래, 유흥산업과 과칭코업의 운영 또는 통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여 약물복용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 중에서도 영향력 있는 조직은 소그룹을 점차 흡수하여 대규모의 폭력조직으로 성장하여 1963년에는 5,107단체 184,091명에 이르는 폭력단이 되어 역사적으로 그 구성원수에 있어서 가장 절정기에 이르렀다.

조직범죄집단들의 조직이 확대되고 그들의

활동이 점점 폭력화 및 악랄해지자 일본경찰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여 1964년에는 소위 '우두머리 검거전략'을 세우고 대규모 범죄조직의 오야붕급, 자금원 그리고 조직원들을 대거 체포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체포되었던 지도자급이 만기 출소되면서 조직을 정비하여 재조직화를 시도하였고 경찰의 자금원에 대한 단속도 불법적인 활동이 표면화될 때만 실시함으로써 대규모 조직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못하였다. 자금조달방법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로, 예를 들면 폭력을 통한 민사관계 개입, 합법적인 정치 또는 사회운동을 표방하는 단체의 설립, 기업협박과 사기 등을 통하여 계속된 구성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증가하여 지하세계를 틀어 잡았다.

그 중에서도 야마구치구미(山口組), 이나가와카이(稻川會), 스미요시카이(住吉會) 등 3대 세력의 증대가 두드러져 1963년 3대 조직의 구성원이 전체 폭력조직의 8%에 불과하던 것이 1989년에는 46%를 차지하여 거대조직으로 발전하였다.

#### 4. 최근의 폭력조직

사회경제활동의 광역화 현상에 따라 폭력단의 광역화 및 국제화도 더욱 진전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야마구치구미를 비롯한 중점대상 3단체는 전국 각지에 새로운 자금원을 찾아서 그 세력의 확대를 기도하고 있으며 이들 조직에 의한 독점화로 세력범위는 전국 대부분

의 지역에서 깊이 확산되고 있다. 이외에도 폭력단은 해외로부터 권총, 각성제 등의 밀수입과 해외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어 국제화 경향이 현저해지고 있다. 또 폭력단은 도박, 각성제 등의 전통적인 자금획득활동 외에 거대한 조직의 위력을 배경으로 민사개입 폭력과 기업대상 폭력을 일으키고 있으며, 증권거래에도 개입하는 등 '경제 마피아'화 하여 점차 사회의 이면에서 표면화하고 있다. 이와같은 폭력단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위기감을 배경으로 일본경찰은 1991년 5월 15일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을 제정하여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한편 폭력단 대책법의 성립과 전후하여 폭력단은 사무소 간판과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폭력단 대책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폭력단에 대한 국민의 눈을 의식해서 과벌투쟁이나 총기 발포 등의 과격한 행동을 삼가하는 등 눈에 띄는 행동은 자제하고 있다.

#### 가. 폭력단 활동의 광역화 및 독점화

중점대상 3단체에 의한 독점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1991년 말 폭력단의 구성원은 약 63,800명, 준구성원은 약 27,200명으로 이 가운데 야마구치구미, 이나가와카이 및 스미요시카이 등 중점대상 3단체는 전국에 구성원 약 38,500명, 준구성원 17,600명 합계 약 56,100명으로 전체의 61.6%의 세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약 13,

400명이 늘어나 31.7%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폭력단 세력의 증가비율에 비해 현저하게 높고 중점대상 3단체에 의한 독점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본 최대의 폭력조직인 야마구찌구미는 1991년 말 전체 폭력단 세력의 38.9%를 보유함으로써 산하 조직의 범위는 거의 전국에 미치고 있다.

또한 폭력단 사이의 지역별 파벌투쟁은 전국적인 파벌투쟁화하여 결국 광역 폭력단간의 싸움으로 치달아 상호 공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안 때문에 폭력단 단속을 위한 각 도도부현 경찰의 상호공조체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나. 폭력단 활동의 국제화

총기와 각성제 등의 거래, 일본인 관광객 상대의 도박을 통한 자금획득활동, 도피처로서의 거점구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최근 일본 폭력단의 해외진출이 현저해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 여성의 매춘취업과 근로자의 불법취업에 관여하여 그 댓가 혹은 노임을 착취하여 폭리를 취하는가 하면 해외에서의 부동산 구입이나 부동산 거래 등의 사업도 시도하여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더욱이 해외의 범죄조직과 제휴를 강화하여 의형제와 같은 혈연관계를 맺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의 범죄조직 또한 일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예도 발견된다.

국제적인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또다른 하나는 권총 등 무기거래를 통한 무장화의

진전이다. 지난 1985년 한해동안 압수한 권총의 수 1,767정 이래로 감소추세를 보이던 것이 1991년에는 954정을 압수하여 전년도 대비 36정(3.9%)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총기거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국 방면으로부터 트카래프형 권총이 다수 밀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권총은 1987년에 처음 압수된 이래 해마다 증가하여 1991년에는 265정이 압수되어 전체 압수 총기의 27.8%를 차지하고 있다.

#### 다. 자금획득활동의 다양화 및 교묘화

폭력단의 자금획득활동은 공식적인 경제사회에 공공연히 진출하는 등 한층 교묘화, 다양화의 양상을 노정하고 있어 시민 생활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크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즉 폭력단은 각성제의 밀매, 도박 등의 전통적인 자금획득활동을 활발히 행하는 한편 민사개입 폭력, 기업대상 폭력 등 새로운 형태의 자금획득활동을 도모하는 외에 풍부한 자금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사업분야에까지 진출하는 등 시민생활과 경제활동에의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민사개입 폭력이란 일반시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거래에 민사상의 권리자나 관계자의 자격으로 개입, 관여하여 위법부당한 이익 획득을 도모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채권 환수 및 금전대차의 시비, 어음할인 관련 개입, 기업도산채무 관여, 가옥 임대차 등 부동산 문제 개입, 교통사고 및 매매대금 관련 시

비 등이다. 교통사고의 합의와 부동산 임대차에 따른 문제 등의 당사자 중에는 폭력단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도 있기 때문에 폭력단의 민사개입 폭력이 조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폭력단의 이용자도 결국에는 폭력단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민사개입 폭력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땅값 상승을 배경으로 한 부동산 가격조작과 같이 대규모화하고 있고 폭력단은 이들 사안에 개입하여 보다 거액의 불법이익을 획득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조작 등의 불법사안건수는 최근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라 감소경향에 있으나 아직도 1986년에 비하면 1.7배 수준에 있으며 검거한 모든 사건이 폭력단이 관련되어 있고 지가폭등 경향의 지방확산 현상에 따라 이러한 불법사안도 지장으로 파급되고 있다. 1991년 중 부동산 가격 조작 등에 관련된 불법행위 검거건수는 13건 41명이고 13건 모두에 폭력단이 관련되어 있다.

폭력단은 또 소주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집단(총회꾼, 신문깡패, 회사깡패)이나 사회운동을 표방하는 깡패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기업을 상대로 하는 부당행위도 자행하고 있다. 그 수법도 공사소음에 대한 보상비나 사업자금 용자명목으로 돈을 착취하거나 기관지를 고액으로 구독하게 하는 등 한층 교묘화하고 있다.

또한 폭력단은 이른바 재테크 붐을 배경으로 호황을 보이는 증권거래에 개입하여 이익

을 얻는 등 합법적인 기업경영에 참가하여 자금획득을 기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폭력단이 표면적·합법적인 경제사회에 진출하여 '경제 마피아'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폭력단의 준구성원으로서 폭력단의 위력을 배경으로 기업의 외관으로써 각종 이권을 찾아다니는 '프론트 기업'(폭력단 주변에서 자금제공 역할을 담당하며 企業師弟라고도 함)이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여러가지 경향은 종래의 단지 난폭한 폭력집단에서 지능적 폭력집단으로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폭력단의 활동은 일본의 건전한 경제제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 5. 폭력단 대책법 성립후의 폭력단 동향

폭력단 대책법에 의해 지정 폭력단으로 지정되면 폭력적 요구행위를 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폭력단으로서 상당한 타격이 되기 때문에 폭력단측에서도 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각종 대책을 강구하여 폭력단으로서의 외관을 감추거나 법인화 등으로 그 목적을 가장하는 등 조직방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폭력단 대책법 성립의 원동력이 된 폭력단 배제 여론의 비판을 피하고 범죄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은폐하기 위해 과격한 행동을 자제함으로써 1991년 중에는 파벌 투쟁사건이 12건 47회로 전년에 비해 사건수는 15건(55.6%), 발생회수는 99회(67.8%) 각각 격감하였고 총기발포 사건도 대폭 감소

하고 있다.

또한 파벌사무소의 간판이나 현수막을 철거하고 약물사용자와의 접촉금지를 하는가 하면 폭력단을 주식회사 등의 법인으로 가장하기도 하고 우익단체를 설립하여 관련활동을 함으로써 정치단체로 변장하는 경향도 있으며 심지어 폭력단을 해산하거나 폭력단을 탈퇴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 III. 폭력단의 실태

본 장은 1993년 1월부터 5월에 걸쳐 일본 경찰청과 전국 폭력추방운동 추진센터 및 총리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 경찰백서(1993)를 참조 바란다. 폭력단원 피의자에 관한 조사(피의자 조사)는 일본 경찰청이 전국 도도부현경찰에 체포·구류된 폭력단구성원 피의자 1,4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국 환락가의 폭력단 실태에 관한 조사(환락가 조사)는 일본 주요 9개시의 환락가에서 풍속영업 및 풍속관련영업 또는 심야 주류제 공음심점 영업을 하는 자중 5,156을 대상으로 2월에서 3월에 걸쳐 실시하고 2,785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었다(회수율 54%). 폭력단에 대한 설문조사(국내기업 조사)는 일본 국내의 대기업 3,061사를 대상으로 2월에 실시하고 2,359사로부터 회답을 얻었으며(회수율 77.1%), 폭력단의 해외활동에 대한 설문조사(해외기업 조사)는 일본 대기업의 지점, 주재

원 사무소 등 해외거점 1,231개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5월에 걸쳐 실시하고 662거점으로부터 회답을 얻었다(회수율 53.8%).

폭력단에 대한 여론조사(여론조사)는 총리부가 전국 3,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1월에 실시하고 2,166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었다(회수율 72.2%).

#### 1. 폭력단의 조직원리

폭력단은 규모, 활동지역 등을 달리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그 조직의 위력을 배경으로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시민생활이나 경제거래에 개입하여 위법 혹은 부당하게 자금획득활동을 행하고, 대내적으로는 강한 조직통제를 행하는 등 몇 개의 공통된 독특한 특징을 볼 수 있다.

##### 가. 조직 위력의 존재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다수는 폭력단원을 「허세를 부리고 있다」(57.2%), 「악랄한 일만 하고 있다」(45.2%)라고 보고 있다.

현재 폭력단원은 살인, 공갈 등의 범죄를 되풀이함과 동시에 다수의 무기를 보유하고 상호 대립투쟁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보도를 통해 국민이 폭력단에 대하여 '무엇을 할 지 알 수 없는 무서운 단체다'라고 하는 의식을 형성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폭력단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로서 49.1%가 「피해를 당해도 폭력단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를 들고 있다.

### (1) 각 폭력단원의 높은 범죄성

폭력단 세력(구성원과 준구성원)의 검거인원은 과거 4년간 매년 3만명선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법무성 자료에 따르면 복역중인 폭력단 세력은 1975년말 현재 7,931명(전 수형자의 21%)이지만 1992년말 현재에는 10,691명(전 수형자의 28.7%)이나 되고 있다. 또 1992년 신수형자 20,864명중에서 차지하는 폭력단 수형자는 4,566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폭력단원은 그 검거회수가 현저히 많은데 이것은 폭력단이 범죄를 되풀이 하여 행하고 있는 자가 많은 집단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범죄의 종류에 관해서도 살인, 강도, 강간 등의 흉악범죄를 비롯하여 공갈, 상해, 각성제 사범 등 다종다양하여 높은 범죄성을 보이고 있다.

1991년 7월에는 대표적인 폭력단인 야마구찌구미의 폭력단원 4명이 재력가의 집에 침입하여 가족을 협박, 현금을 강취한 후 승용차로 폭력단 사무소에 도착하여 2명을 살해하고 그 시체를 작업소의 소각로에 넣어 소각한 뒤 유골을 항구에 투기한 사건은 최근 우리나라의 전남 영광에서 발생한 지존과의 연쇄 살인 및 시체소각사건과도 그 수법이 비슷하여 관심을 가질 만하다.

### (2) 집단의 형성에 의한 범죄의 조장

1992년중 각성제의 영리양도사범으로 검거된 자의 75.2%가 폭력단 세력으로, 각성제의 밀매 등 조직범죄의 다수는 폭력단 세력에 의해 감행되고 있다. 또 폭력단은 그 활동거점

인 사무소를 가지고 문신을 새기며 자기 영역으로서 세력권을 주장하여 이로써 조직의 존재와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 결과 개개의 폭력단원이 조직의 위력을 이용하여 공갈 등의 자금획득활동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폭력단의 존재는 개개의 폭력단원의 범죄성을 한층 조장하게 되고 범죄의 발생에 주는 영향은 지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 (3) 권총 등 무기소지의 보편화

진짜 권총의 불법소지로 검거된 자의 태반이 폭력단 세력(전체의 83.3%)이고 폭력단에 의해 은닉된 권총 등의 무기가 다수 압수되고 있다는 점에서 폭력단의 무기소지는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력단의 대립투쟁사건시 권총 등의 무기가 사용되어 일반시민이 사건에 휘말려 골탕먹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나. 조직구조와 내부통제

#### (1) 조직구조

일반적으로 폭력단 조직은 중세 봉건시대의 가부장적 제도를 모방해 준혈연단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조직의 명칭이 '○○家', 보스는 오야붕(親分), 부하를 꼬붕(子分), 고참구성원을 아니키(큰형), 신참을 샤테이(동생), 보스의 의형제들을 오지(아저씨)라고 부르는 명칭 체계에서 알 수 있듯이 두목과 구성원과는 친자에 비유하고, 선후배의 폭력단원간에는 형제에 비기며 다른 단체의 두목들도 형제로 간주하는 등 의제적 혈연관계에 의해 조직

되어 있다.

이러한 혈연관계는 사카즈끼고또(주종의 관계를 맺는 맹세의 술잔)라고 불리는 의식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러한 의식은 초기 범죄조직인 바쿠토와 데기야에서부터 유래되었다. 주로 일본의 고유종교인 神道の 사원 즉 神社에서 진행되는 이 의식에서는 술잔에 들어있는 술도 신분에 따라 다르고 동급의 형제관계나 두목간의 조약을 맺는 경우에는 술의 분량을 같게 따르고 형과 동생의 관계인 경우에는 형의 잔은 6할정도, 동생의 잔은 4할정도 채우게 된다. 또한 술을 마심과 동시에 상호간에 지켜야 할 의무를 과하여 비로소 혈연관계에 기초한 맹목적인 복종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또 폭력단은 각각의 폭력단마다 그 명칭이 다른 물론, 많은 경우 ‘組長’, 會長의 통제하에 ‘若頭’(소두목), ‘理事長’, ‘本部長’, ‘副會長’, ‘理事’, ‘幹事’ 등의 상위자와 그 외의 구성원이라 불리는 지위의 상하에 의해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내부통제

조장 등 상위지위에 있는 구성원은 하위에 있는 구성원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 (가) 조장 등의 명령의 구속력

폭력단원에 있어서 조장 등 상위에 있는 자의 명령은 절대적인데 예를 들면 조장 등이 ‘까마귀는 희다’라고 하면 그 구성원도 ‘까마귀는 희다’하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정도의 상명하복 의식이 정착되어 있다. 피의자 조사

에서 수령으로부터 명령, 지시에 대해 어느 정도 복종하는가 물었을 때, 「절대적으로 따른다」라고 답한 사람이 56.7%를 차지하고, 또 아들 역할(구성원)이 부모역할(수령)의 말을 듣는 주요한 이유로서는 「수령의 명령이 절대적인 것」 또는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규칙」을 드는 자가 가장 많은 것을 보아 조직 내부에 있어서 조장 등의 명령의 구속력이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조원의 의무

폭력단은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내용은 폭력단에 따라 다르지만 투쟁에의 참가, 사무소의 당번 등이다. 피의자 조사에서 대립투쟁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물음에 「몸을 바쳐 싸울 각오가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3.3%를 차지하고 있어 폭력단원이 소속한 조에의 충성심과 귀속의식이 높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조와의 연락방법 등에 있어서 어떤 의무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무선호출기의 휴대」, 「사무소에서의 당번제」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폭력단은 내부질서를 지키기 위해 몇 종류의 금기사항을 정해 놓고 있는데 그 주요한 것으로서는 「상위자에 반항하거나 폐를 끼치는 행위의 금지」, 「동료를 파는 일, 밀고, 배반의 금지」, 「내부투쟁, 동료간 싸움 금지」 등을 들고 있어 조직의 결속유지가 중시됨을 알 수 있다.

(다) 통제위반에 대한 제재

조장 등 상위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폭력단 조직내부의 금기사항 위반자에 대하여는 '破門', '絶縁' 등에 의한 조직으로부터의 배제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고 린치 등의 폭력적 제재가 따르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조직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자는 특히 엄한 폭력적 제재가 가해진다. 破門은 폭력단으로부터 추방하지만 추후 복귀의 가능성을 가진 경우이고 絶縁은 폭력단으로부터 영구추방하는 처분인데 이러한 처분에는 破門狀, 絶縁狀을 작성하여 다른 폭력단에게도 모두 통보하고 있다.

(라) 폭력단원예의 보장

폭력단은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검거된 때에 차입, 변호사의 알선 등의 보살핌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 조사에서 금회 검거후 소속한 조직의 보살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차입에 관해서는 59.9%, 변호사의 알선에 관해서는 48.4%가 보살피 주었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폭력단 조직에 특히 공헌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폭력단 조직내에 있어서 그 공로가 보상된다. 예를 들면, 다른 폭력단과의 투쟁시 조장 등 상위자의 명령에 따라 상대 폭력단을 습격한 자, 경찰에게 검거되어도 폭력단 조직의 관여를 부정한 자 등은 형무소에서 출소하면 폭력단 내부에서의 지위 승격과 상응한 보수를 받는다. 피의자 조사에서 현재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물었던 바, 「의리와 사교성」, 「가입기간」외에 「몸을

바쳐 조직에 충성」을 드는 자가 많았다.

다. 자금획득활동

폭력단은 표면적인 목적과 상관없이 소속된 폭력단원의 생계를 유지하고 조장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 조직의 위력을 이용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자금획득활동을 하고 있다.

(1) 조직의 위력을 배경으로 한 자금획득범죄

폭력단원은 조직의 위력을 배경으로 하여 다른 사람의 개입을 막고 단속기관에의 신고를 곤란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각성제의 밀매와 도박을 행하고 있다. 즉 도박장을 개설하고 자리세를 갈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그 예이다.

(2) 조직의 위력을 이용한 자금획득활동

폭력단원은 자기가 속한 폭력단의 위력을 이용하여 폭력단의 명칭을 알리고, 또한 폭력단의 직함을 적은 명함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획득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그 대상과 수법 등에 따라 민사개입 폭력, 기업대상 폭력 등의 행태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음식점에 대한 폭력단원세, 가로채기, 자릿세, 신변보호세, 보호세 등 다양한 명목의 부당한 금전요구나 물품(마른 안주, 방향제 등)의 구입, 음화 및 물수건 등의 대여 강요, 교통사고시 합의관련 금품요구, 기업에 대한 잡지구독 강요, 사업자금 명목의 융자 강요 등이 있다. 환락가 조사에 의하면 13.5%의 업소가 폭력단원으로부터 금품이나 거래

를 강요받았다고 답하고 있다. 또 국내기업 조사에서 42.1%의 회사가 폭력단이나 사회운동 표방 깡패로부터 금품요구나 계약체결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하며, 그 주체는 폭력단이 25.8%이고 프론트기업(사제기업)이 12.3%, 사회운동 표방깡패가 80.5%이며 총회권이 36.0%라고 답하고 있다. 각각의 조사에 있어서 폭력단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업소나 회사를 대상으로 상대방이 폭력단원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폭력단원은 자기를 소개하는 것 외에 명함이나 특유의 언동에 의해 폭력단원이란 것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기업 조사에서 폭력단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회사에 요구의 양태를 들어보면 「금액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왔다」고 하는 것이 31.6%인 반면, 「구체적인 내용을 암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4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폭력단원의 금품요구시 범죄요건을 구성하지 않는 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폭력단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업소나 회사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보면 환락가 조사에서는 「물품강매, 대여료」(73.3%), 「폭력단원세, 가로채기, 신변보호세 등」(34.7%)의 순이고, 국내기업 조사에서는 「기관지 구입 강요」(44.5%), 「기부금, 찬조금 명목의 금품요구」(36.3%), 「물품구입 강요」(29.7%), 「클레임 또는 협상 명목의 금품요구」(27.3%), 「기관지에의 광고계재 강요」(18.0%), 「용자

의 요구」(9.0%)의 순이다. 역시 각각의 조사에 있어서 폭력단원으로부터 요구에 응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을 보면 환락가 조사에 있어서는 188개 업소가, 국내기업 조사에서는 41개사가 「있다」고 하고 있다. 국내기업 조사에 있어서 폭력단에게 준 금액을 보면 10만엔 미만이 41개사중 25개사를 차지하지만 1,000만엔 이상 1억엔 이하, 1억엔 이상도 각각 1개사이다.

### (3) 폭력단 프론트기업

최근 표면으로는 폭력단과 무관한 것처럼 위장한 폭력단 프론트기업을 교묘히 활용하여 경제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거액의 이익을 얻는 등 폭력단이 그 실체를 숨겨 표면상 기업활동을 가장하면서 공식적인 제도경제권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이 폭력단 프론트기업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거품경제시기를 통하여 현저했었고, 폭력단 대책법 성립과 시행과 더불어 폭력단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 (4) 폭력단 내부에서의 자금 흐름

폭력단의 범죄와 민사개입 폭력 등에 의해 획득한 자금은 폭력단 조직의 상층부로 모이게 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폭력단원의 내부에서 일정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가 정기적 혹은 수시로 일정액을 보다 상위자에게 상납하는 것으로 통상 이 돈을 상납금이라 한다. 상납금은 보통 1개월마

다 바쳐지고 폭력단 내부 지위에 상응하여 고위에 있을수록 고액의 상납금이 납입된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폭력단의 경우에는 매월 수익액에 달하는 현금이 조장 등 상위자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아래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어느 대규모 폭력단의 1개월 상납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장 등		합계 5억2,700만엔
A급 간부 약 50명 × 150만엔	계 7,500만엔	}
B급 간부 약 60명 × 120만엔	계 7,200만엔	
C급 간부 약 250명 × 40만엔	계 10,000만엔	
D급 간부 약 550명 × 25만엔	계 12,500만엔	
E급 간부 약 900명 × 10만엔	계 9,000만엔	
F급 간부 약 1,300명 × 5만엔	계 6,500만엔	

또한 피의자 조사에서 상납금이 높다고 생각하는가, 상납금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각각 「당연한 액수라고 생각한다」(45.4%), 「상납하는 것이 결정되어서」(68.6%)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을 보아 상납금을 지불하는 하는 것이 폭력단 내부에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또 한가지는 하위자가 자금획득활동을 행하지만 그로 인해 얻어진 이익은 상위자의 소득이고 하위자는 처와 애인 또는 조장 등으로부터 생활의 보살핌을 받거나 업무를 하며 생활하는 유형이 있다. 피의자 조사에서 상납금을 바치지 않는다고 답한 자는 42.5%지만 그중의 69.1%는 조직의 수령도 간부도 아닌 일반 폭력단원이고 51.0%가 처, 조장 등으로부터 생활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자가 많은 것은 소위 상위자의 자금획득활동의 도구로 사용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상위자에게 모여진 돈은 폭력단 내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혹은 조장 등 상위자 개인의 생활비나 유흥비, 다른 폭력단의 경조사비 등에 사용된다. 이처럼 폭력단 내부에서 아래에서 위로 바쳐지는 구조가 형성된 결과, 상위자들은 스스로 검거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자금획득을 위한 범죄를 감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두머리의 검거가 곤란한 것이다. 대규모 폭력단의 조장 등은 일급지에 저택을 짓고 고급 외제차를 타는 등 일반시민에게는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만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조직에서 맡은 책임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접을 받고 있다고 보여진다.

## 2. 폭력단원의 실태

### 가. 폭력단원의 가입

피의자 조사에서 최초 폭력단 가입 연령에 대한 질문에 24세까지 가입한 자가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폭력단 가입 동기에 대한 질문에는 「폭력단을 좋은 것이라 생각하여」 가입한 비율이 36.5%로 가장 많으며 이 외에도 「의리와 인정의 세계에 이끌려서」 등 폭력단을 우호적으로 평가하여 가입한 경우가 많다.

또한 소년 폭주족과 폭력단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폭력단과 관계가 있는 비행집단 또는 폭력단에 가입하고 있는 형법범소년의 포괄죄중별 보도상황을 보면 조폭범, 흉악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조폭범(폭행, 공갈, 상해)이 58.5%이고 흉악범이 5.9%이며 나머지는 절도범(22.6%), 지능범, 풍속범 등이다.

#### 나. 폭력단원의 생활상황

피의자 조사에서 취업상황, 수입, 납세여부, 인생관 등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다.

##### (1) 폭력단원의 취업과 수입

취업상황은 48.3%가 무직이며 취업자 716명은 건설업(26.0%), 부동산업(14.1%), 노점(11.7%), 금융업(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합법적 수입원에 대하여는 채권회수(28.1%), 폭력단원세(13.1%), 각성제 밀매(9.8%), 도박(8.8%)의 순이며, 합법적 수입과 비합법적 수입을 합한 1개월의 수입은 11-20만엔(20.9%), 21-30만엔(20.5%)로 가장 많고 101만엔 이상도 5.9%가 있으며

월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도 12.2%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국민연금 가입과 납세 상황

국민연금은 22.2%만이 가입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63.1% 가입, 기타 건강보험은 12.1%가 가입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도 2.3%가 되며, 소득세는 25.3%, 주민세는 37.5%만이 납입하고 있다.

##### (3) 폭력단원의 인생관과 생활목표

인생관은 「돈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다」, 「대중 앞에서 모욕을 당하면 복수하겠다」, 「외제차나 유명상표 상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멋있다」, 「의지하고 있는 사람의 말에는 절대로 따르겠다」 등의 경향을 많이 보여 결국 비합법적 수단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보복과 상위자에의 충성을 중시하는 폭력단원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인생목표에 대하여는 「돈을 축적하거나 회사를 경영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32.9%를 차지하고 있고, 「당면한 생활비 늘린다」(18.6%), 「단지 아무 생각없이 지내고 있다」(17.6%)의 순으로 나타나 부의 축적이 가장 큰 목표로 나타나고 있다.

### 3. 지정폭력단의 실태

폭력단 대책법에 근거한 지정폭력단으로서 지정되어 있는 폭력단(도표 참조)은 1993년 3월 말 현재 18개 단체로서 다음과 같다.

#### 가. 五代目山口組

五代目山口組는 兵庫縣 神戸市에 본부 사무

소를 두고 있으며, 그 세력은 東京都,北海道,大阪 및 京都府, 38縣에 걸쳐 약 23,100명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일본 최대의 폭력단이다.

五代目山口組는 1915년에 야마구치 하루요시(山口春吉)가 부두의 하역인부들을 모아 神戸市内를 본거지로 결성한 부두깡단인 '야마구치구미(山口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처음에는 고전적인 바쿠도의 체제를 유지하다가 야마구치 하루요시의 친아들 야마구치 노보루(山口登 : 2대 조장)에 이어 다오카 카즈오(田岡一雄)가 3대 조장이 되면서부터 전후 신흥폭력조직인 구렌타이의 전술로 급속히 성장했다. 1946년 다오카는 조장자리에 오르면서 고베 부두에 야마구치 건설회사를 설립하고 지방의 건설업에도 손을 뻗치면서 고베 부둣가를 중심으로 부두 노동자 중개업을 하여 1960년대 중반에는 전체 하역량의 8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한해동안 60억엔을 벌여 들었다. 한편 도박사업도 벌여 음성수입을 올렸는데 고베와 인접한 오사카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고 전국적인 확장을 시도하여 40년대 말에는 다오카 폭력배들이 서부 일본을 지배하게 되었다. 휘하의 여러 조직들은 부두와 건설현장의 일당 노동자들을 장악했으며 수천여개 노점운영을 독점했고 현지의 술집과 전국의 회사에서 현금을 갈취하고, 길거리의 투전에서부터 수백억엔이 오가는 대규모 카드게임까지 사기도박업을 운영했다. 또한 그들은 정당을 조직하고 우파정치인들의 선거보좌원

으로 일했으며, 접대부와 윤락녀를 둔 나이트 클럽과 카바레도 운영하였다.

제3대 조장으로 취임한 다오카는 뛰어난 재능과 잔인성을 지닌 야마구치의 신화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1955년부터 1965년까지 야마구치 조직들은 다오카 조장을 중심으로 질풍처럼 각지에 진출하여 현지 조직을 와해시키며 세력을 확장했다. 1960년의 아카토모사건(明友會事件), 1964년의 마쓰야마사건(松山事件) 등 허다한 대립투쟁을 거치면서 야마구치의 세력은 강화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야마구치구미는 프로권투, 스모 및 레슬링에까지 손을 뻗쳤고, 흥행업계 회사 100여개를 지배했다. 뿐만 아니라 야마구치구미는 수십개의 텔런트 대행업과 투진회사들을 운영했는데 많은 출연자들은 폭력단 후원자들의 도움없이 출연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야쿠자 영화를 필요로 하는 영화사들도 범죄조직들의 세력권으로 들어갔다. 이외에도 마약판매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월간 상납금 조달의 주수단으로 삼았다. 경찰은 당시 폭력단 수입의 절반 정도가 마약판매 즉 히로뽕 밀매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산했다. 기타 고리대금업, 밀수, 음란물 취급에도 물론 개입했다.

이들은 표면상 합법적인 회사를 통해 지하철 및 공항건설과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를 하고, 야구와 경마의 승부를 조작하는가 하면 저당물의 불하를 조작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하였다. 이와 같은 조직

의 기업화 양상은 폭력단을 크게 고무시켰으며 폭력단은 이윤을 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뛰어 들었다. 병원, 영어학원, 흥행장 및 운명감정소를 비롯하여 부동산, 비디오 게임, 트럭운송, 오물처리, 경호업을 비롯하여 일본의 우표와 인지, 미국달러, Cartier시계 및 상표있는 식료품 등 생산유통에까지 끼어 들었다.

다오카 체제의 야마구치구미는 500개가 넘는 산하 조직에 103명의 두목을 두었는데, 이 두목들도 서열에 따라 최고위층에는 사데이(동생들) 4명과 이사급인 와카시라호사(젊은 두목의 보좌관) 8명을 두었으며 三老會란 6명의 장로급 협의집단도 있었다.

다오카는 대부로서 조직의 구체적인 일상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제 2인자인 야마켄으로 하여금 월 1회 주요두목 12명과 회의를 주재하여 조직의 정책결정과 상납금 분배를 하며 조직을 관리하게 하였다. 이 지도체제의 하부조직으로 여러 하급사무소가 있고 거기에는 간부 1명과 부하 83명정도가 소속되어 있으며, 각 조직내부에는 역시 오야붕-꼬붕관계에 기초한 유사관계들이 존재하고 그 외에도 다수의 견습조원과 주변의 관련자들이 있다.

1984년 다케나카 미사히사(竹中正久)가 4대 조장이 되었으나, 이에 불복하는 자들이 대거 조직을 탈퇴하여 一和會를 결성함으로써 야마구치구미와 장기간 세력다툼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케나카 조장이 1985년 1

월 사살되고 1988년 4월 양 계파의 대립투쟁이 수습되면서 4대 야마구치의 若頭지위에 있던 와타나베 요시노(渡邊芳則)가 5대 조장을 승계했다. 그 이후에도 타 폭력단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세력확대를 기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폭력단과 많은 대립투쟁을 일으키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8년 11월, 야마구치 산하조직이 山形市内에 진출하여 세력확대를 기도하자 이 지역을 세력권으로 활동하던 極東關口一家가 이에 대항하여 야마구치 폭력단원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야마구치구미는 전조직을 동원하여 東京, 山形, 青森, 岐阜各都縣에 있는 極東關口一家사무소 등을 습격하여 권총을 발포하고 덤프트럭으로 돌진하는 등 12회에 걸쳐 일방적인 공격을 자행하였다.

#### 나. 稻川會

이나가와카이(稻川會)는 東京都 港區에 본부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그 세력은 東京都와 北海道 및 22개 縣에 약 7,400명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폭력단이다. 이나가와카이는 1969년경 바쿠토의 쓰루오카 마사지로(鶴岡政次郎)의 지배하에 있던 이나가와 가쿠지(稻川角二)가 靜岡縣 熱海市를 본거지로 결성한 것이 그 기원이 되고 있다. 그 후 각지에 진출하여 세력을 확장하면서 조직명칭을 가쿠세이카이(鶴政會), 긴세이카이(錦政會)로 개칭하여 오다가 1972년에 이나가와카이(稻川會)로 바꾸게 되었다.

1985년 9월, 稻川角二가 최고책임자인 총

재가 되었고, 石井進이 제 2대 회장에 올랐으며, 1990년 6월 稻川角二의 친아들인 稻川土肥가 제 3대 회장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稻川會도 다른 폭력단과 많은 대립투쟁사건을 일으키고 있는데, 1990년 6월 青森縣 弘前市内의 관할권을 놓고 極東關口一家와 세력 다툼을 벌여 稻川會는 권총을 발포하며 사무소를 습격하는 등 5회에 걸쳐 공격을 시도했다.

이나가와카이는 야마구치구미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피라미드형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가족적 유대관계를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야마구치구미보다 조직의 규모는 작으나 조직운동에 융통성을 지니고 있고 보다 철저한 규율과 긴밀한 조직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나가와카이는 야마구치구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일 뿐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

이나가와카이가 이처럼 막강한 조직으로 성장한 주요 원인은 그 회원구성에 있다. 이나가와카이는 전통적으로 바쿠토, 즉 노름꾼 출신들이어서, 일본의 전통적인 3대 깡패무리인 도박꾼과 노점상 및 불량배를 한 데 모아 조직한 야마구치구미보다 조직의 일관성을 보다 잘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조직의 수입원은 역시 도박이다. 경마조작, 고액의 카지노 경영 및 해외도박여행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 외에도 오래전에 이미 다른 전형적인 불법사업인 고리대금업, 마약밀매 및 각종 형태의 사

기를 통해 조직을 확장하였으며, 1979년 경찰 추계에 나타난 것처럼 이나가와카이는 건설, 흥행업, 카바레 및 식당을 포함한 879개의 합법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연간 총수입은 약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타 조직과 같이 조직은 상납금을 바탕으로 재정적 유지를 하고 있는데, 1974년 경시청의 추적조사에 따르면 단 하나의 구좌를 통한 조직내의 강제헌금이 5억 8천만엔에 달하고 있다. 최고두목들은 매월 25만엔을 지불해야 하며 그보다 밑에 있는 두목들은 하향조정되어 있다.

조직은 119개 하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출된 두목 12명이 이사회 역할을 한다. 이나가와의 아들이 후계자가 된 것은 현대 야쿠자 세계에서 보기 드문 일이며, 이제 이나가와카이는 새로운 세대의 국제지향적인 폭력단을 지향하는 개인적 세습왕조를 건립할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 다. 住吉會

스미요시카이(住吉會)는 東京都 港口에 본부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그 세력은 東京都와 北海道 및 大阪府 및 15縣에 약 8,000명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다. 스미요시카이는 1518년 요코하마에서 부두하역작업을 하고 있던 아베시게사쿠가 동경시내를 중심으로 결성한 住吉一家二代目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그 후 港會, 住吉會, 住吉連合, 住吉連合會의 이름으로 변천하다가 1991년 2월 住吉

〈지정폭력단의 지정상황〉

(93년 3월 현재)

名 稱	主事務所所在地	代表者	勢力範圍	構成員	指定年月日	代紋
五代目山口組	兵庫縣神戸市灘區篠原本町 4-3-1	渡邊 芳則	1都 1道 2府 38縣	約2萬3,100人	平成 4年 6月 23日	
稻 川 會	東京都港區六本木7-8-4 八千代ビル3階	稻川角二	1都 1道 22縣	約 7,400人	平成 4年 6月 23日	
住 吉 會	東京都港區新橋5-4-1ふくやビル 3階	西口 茂男	1都 1道 1府 15縣	約 8,000人	平成 4年 6月 26日	
三代目旭琉會	沖繩縣那霸市牧志 2-15-9	翁長 良宏	縣 內	約 430人	平成 4年 6月 26日	
沖繩旭琉會	沖繩縣那霸市辻 2-6-19	富永 清	縣 內	約 570人	平成 4年 6月 26日	
二代目工連合 草野一家	福岡縣北九州市小倉北區神岳 1-1-12	溝下 秀男	3 縣	約 600人	平成 4年 6月 26日	
五代目合田一家	山口縣下關市竹崎町 3-14-12	李 大康	4 縣	約 370人	平成 4年 7月 27日	
四代目共政會	廣島縣廣島市南區仁保新町 2-6-5	沖本 勳	縣 內	約 330人	平成 4年 7月 27日	
四代目會津小銃	京都府京都市下京區東高瀬川筋上 ノ口上ル岩瀧町 176-1	李 外秀	1道 2府 1 縣	約 1,600人	平成 4年 7月 27日	
四代目小櫻一家	鹿兒島縣鹿兒島市甲突町 9-1	平岡 喜榮	縣 內	約 190人	平成 4年 7月 27日	
三代目淺野組	岡山縣笠岡市笠岡 615-11	串田 芳明	2 縣	約 150人	平成 4年 12月 14日	
二代目道仁會	福岡縣久留米市通東町 6-9 日建興 業ビル2階	松尾誠次郎	4 縣	約 510人	平成 4年 12月 14日	
親 和 會	香川縣高松市鹽上町 2-14-4	細谷 國彥	2 縣	約 80人	平成 4年 12月 16日	
雙 愛 會	千葉縣市原市辰巳台 5-9-9 黒田 ビル2階	申 明雨	3 縣	約 430人	平成 4年 12月 24日	
三代目山野會	熊本縣熊本市南熊本 5-10-20	池田 鉄雄	縣 內	約 100人	平成 4年 12月 24日	
石 川 一 家	佐賀縣佐賀市本庄町大字袋 229-5	石川 清康	2 縣	約 100人	平成 5年 5月 18日	
二代目狹道會	廣島縣尾道市新高山 3-1170-221	森田 和雄	6 縣	約 230人	平成 5年 3月 4日	
二代目太州會	福岡縣田川市大字弓削田 1314-1	田中 義人	縣 內	約 150人	平成 5年 3月 4日	

\* 출처 : 일본경찰백서(1993)

주) 구성원수는 지정시 기준

會로 재차 명칭을 바꾸어 니시구치이세오(西口茂男)가 회장이 되었다.

住吉會는 최근 적극적으로 세력확대를 기도하고 있는데, 특히 니시구치이세오가 회장인 1991년 3월 이후 東北進出을 시도하여 본래 그 지방의 폭력단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면서 도 宮城縣의 盛代盛永會 등을 흡수하는 등 동북지방에 세력을 확대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住吉會의 대립투쟁 양상을 보면, 1985년 10월 동경의 繩張爭에서 발생한 대립투쟁에서 상대 폭력단이 住吉會 산하조직의 조장과 단원에게 각각 총을 발사한 사건이 있자 住吉會 역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조직의 사무소에 총을 발사하기도 했다. 住吉會의 조직상 특징은 다른 폭력단과 같이 모든 권력을 두목 1인에게 집중시킨 것과 달리 그들은 범죄조직의 연합체 성격으로 권력이 분화되어 있다.

즉 이 조직의 정상은 강력한 오야붕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는 모두 동업자로 간주되는 두목 몇 사람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 라. 三代目旭琉會

三代目旭琉會는 沖繩縣 那霸市에 본부 사무소를 두고 沖繩縣內를 세력권으로 약 430명의 구성원을 가진 폭력단이다. 이 폭력단은 1952년경에 형성된 원래의 폭력단인 코자파(후에 山原派)와 那霸派가 1970년 12월 본토의 광역조직폭력단의 오까나와 진출을 저지하고 자신들의 조직을 방위하기 위해 대동단결하여 결성한 沖繩連合旭琉會가 그 기원이

다.

沖琉連合旭琉會는 沖琉旭琉會, 二代目旭琉會로 변천되다가 1983년 5월 三代目旭琉會로 개칭하여 翁長良宏이 회장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0년 9월 조직내부의 권총발포 살인미수 사건으로 三代目旭琉會의 내부분열은 끝나고 이후 41건의 대립투쟁사건을 전개하여 총기사용 32건을 자행하였다.

1990년 11월 三代目旭琉會의 폭력단원은 三代目旭琉會와 沖繩旭琉會 사이의 대립투쟁 사건 진압을 위해 차량에서 경계중인 경찰관 2명을 총으로 살해하고 현장부근을 지나던 목격자에게도 발포하여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 마. 沖繩旭琉會

沖繩旭琉會는 沖繩縣 那霸市에 본부 사무소를 두고 沖繩縣內를 세력권으로 약 570명의 조직원을 가진 폭력단이다.

沖繩旭琉會는 三代目旭琉會의 내분으로 동회의 9개 산하조직이 1990년 9월 조직을 탈퇴해서 같은 해 10월 沖繩旭琉會란 이름으로 富永清(분열전 三代目旭琉會의 이사장)을 회장으로 추대, 조직을 결성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沖繩旭琉會는 1990년 9월이후 三代目旭琉會와 조직의 존망을 걸고 대립투쟁하였다. 1990년 11월 沖繩旭琉會의 단원은 三代目旭琉會 산하조직의 사무소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사무소의 작업을 하던 아르바이트 고교생을 三代目旭琉會의 단원으로 착각하고 권

총을 발사하여 살해하였다.

**바. 二代目工藤連合草野一家**

二代目工藤連合草野一家는 福岡縣 北九州市에 본부 사무소를 두고 福岡縣과 2개縣에 약 600명의 회원을 가진 폭력단이다.

二代目工藤連合草野一家는 1987년 6월 北九州市의 양대세력이었던 工藤會와 草野一家가 그동안의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草野高明을 초대총장으로 합병결성한 工藤連合草野一家에 기원을 두고 있다. 1990년 12월 소두목이었던 溝下秀男이 제 2대 총장이 되고 二代目工藤連合草野一家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2년 10월 二代目工藤連合草野一家의 단원들은 운행중인 운전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신호정차중인 차량의 앞에 끼어들어 운전자의 안면을 구타하고 차 밖으로 끌어낸 뒤 발길질 등의 폭행을 가하며 현금과 차량을 강탈하기도 했다.

**사. 五代目合田一家**

五代目合田一家는 山口縣 下關市에 본부 사무소를 두고 山口縣과 3개縣에 약 370명의 단원을 가진 폭력단이다.

五代目合田一家는 1948년 二代目籠寅組의 두목이었던 合田幸이 下關市를 본거지로 결성한 合田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968년 合田一家로 개칭하고 1987년 5월에 山中大康의 李大康이 五代目合田一家의 총장이 되었다.

그간 적극적인 세력확대를 꾀하고 특히 山

口縣下の 反合田系세력과의 대립투쟁을 거듭하며 이들을 파멸시키거나 압력을 가해 五代目合田一家이후 山口縣下の 반대세력을 흡수하는 등 이 지역 전체를 장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5년 7월 合田一家의 폭력단원은 下關市內에서의 세력다툼시 山口組 산하조직의 조장을 권총으로 살해했다.

**아. 四代目共政會**

四代目共政會는 廣島縣 廣島市에 본부 사무소를 두고 廣島縣을 세력범위로 약 330명회 회원을 가진 폭력단이다.

四代目共政會는 1964년 5월 바쿠토의 山村組 組長인 山村辰雄이 7단체를 규합하여 결성한 폭력단인 政治結社共政會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 후 2대 회장 服部武, 3대 회장 山田久를 거쳐, 1990년 9월 沖本勳이 4대 회장이 되었다.

폭력단원간의 개인적인 싸움 즉 내부투쟁사건에 있어, 1988년 7월 共政會의 단원이 JR 新幹線 廣島驛 구내에서 권총을 난사해 그 유탄으로 일반시민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자. 四代目會津小鐵**

四代目會津小鐵은 京都府 京都市에 본부 사무소를 두고 北海道와 大阪, 京都 및 1개縣에 약 1,600명의 단원을 가진 폭력단이다.

四代目會津小鐵은 1960년 2차대전 종료후부터 京都市내의 세력이던 中島會의 2대 회장인 圖越利一이 1975년에 三代目會津小鐵로 조직명을 개칭하여 발족한 이래, 1886년 7월

三代目會津小鐵의 총재대행겸 이사장이었던 高山登久太郎의 姜外秀가 회장이 되어 조직명을 四代目會津小鐵會라 한 후 1989년 四代目會津小鐵로 다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四代目會津小鐵 역시 다른 폭력단과 많은 대립투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1992년 11월 四代目會津小鐵의 단원은 京都市內 노상에서 택시운전사와 통행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운전사를 난폭하게 폭행을 가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끼어든 중재인까지도 안면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공중을 향해 발사하며 협박한 사건을 일으켰다.

#### 차. 四代目小樓一家

四代目小樓一家는 鹿兒島縣 鹿兒市에 본부 사무소를 두고 鹿兒島縣에 약 190명의 단원을 가진 폭력단이다. 四代目小樓一家는 1948년 大里清藏이 鹿兒島 시내를 거점으로 결성한 小樓組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2대 조장인 片平孝를 거쳐 1969년 神宮司文夫가 3대 조장이 되어 조직을 확장하고 繩張이라고 하는 鹿兒島縣내의 다른 폭력단의 침투를 불허하는 한편 四代目小樓一家도 타현에 진출하지 않는다는 독자방침을 취해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1988년 10월에 平岡喜榮이 4대 총장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2년 1월 동조직의 단원은 노상에서 살인청부자의 머리를 손도끼로 내리찍어서 살해하기도 했다.

#### 카. 三代目淺野組

三代目淺野組는 岡山縣 笠岡市에 본부 사무소를 두고 岡山縣과 廣島縣을 세력권으로 약 150명을 회원을 가진 폭력단이다.

三代目淺野組은 1945년경 大山國男이 현재의 笠岡市를 본거지로 결성한 바쿠토 大山一家에 기원을 두지만, 1952년 4월 大山國男이 은퇴한 후 동조직의 간부였던 淺野眞一이 새롭게 淺野組를 결성하여 세월을 거쳐 1983년 9월 串田芳明이 조장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山口組, 俠道會 등과 대립투쟁을 반복하고 있으며 岡山, 廣島에서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1987년 1월 淺野組의 폭주족과 山口組의 폭주족의 언쟁에서 비롯된 대립투쟁에서 山口組의 폭력단원이 岡山 시내의 淺野組 산하조직 사무소를 습격해서 2명을 살해한 사건의 보복을 위해 淺野組의 단원은 동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倉敷 시내에서 山口組의 단원 2명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 타. 二代目道仁會

二代目道仁會는 福岡縣 久留米市에 주사무소를 두고 福岡縣의 3개현에 걸쳐 약 510명의 조직원을 가진 폭력단이다.

二代目道仁會은 1971년 2월 古賀磯次가 古賀一家의 3단체를 합하여 결성한 道仁會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1992년 1월 간사장이었던 松尾誠次郎이 2대 회장이 되고 二代目道仁會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6년 12월 熊本縣 人吉 시내에서 山口組와의 투쟁에서 道仁會의 단원은 山口組사무소에서 응대하러 나온 山口組 단원을 권총으로 살해했다.

#### 파. 親和會

親和會는 香川縣 高松市에 주사무소를 두고 香川縣과 愛媛縣을 세력권으로 약 80명의 구성원을 가진 폭력단이다.

親和會는 1967년경 당시 해산한 二代目北原組의 간부였던 細谷國彦이 高松市를 본거지로 결성했던 高松親和會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그 후 1971년 親和會로 개칭하였다.

1990년 6월 高松市에서 親和會의 폭력단원은 山口組의 산하조직의 세력권으로 진출하기 위해 山口組의 영향하에 있는 업소에 대해 인사를 요구하자 관련 山口組의 단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복으로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상대방 단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 하. 雙愛會

雙愛會는 千葉縣 市原市에 본부 사무소를 두고 3개 縣에 걸쳐 약 430명의 구성원을 가진 폭력단이다.

雙愛會는 1945년 橫假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바쿠토인 笹田一家의 대부였던 高矯寅松이 결성한 魚水會에 기원을 두고 있다. 동회는 그 후 笹田一家高寅組로 개칭하고 세력을 확대하여 1955년 雙愛會로 笹田一家에서 독립하고 高矯寅松이 회장이 되었으며 대를 거쳐 1992년 9월 高村明의 申明兩가 회장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8년 10월 雙愛會의 단원은 橫假 시내의 음식점에서 주인에게 인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주인의 안면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

#### 거. 石川一家

石川一家는 佐賀縣 佐賀市에 주사무소를 두고 佐賀縣과 福岡縣에 약 100명의 단원을 가진 폭력단이다.

石川一家는 1968년 6월경 石川清康이 동생인 石川秀岡 및 石川芳春과 함께 佐賀市와 大川市방면의 불량배를 모아 佐賀市를 본거지로 결성한 石川組에 기원을 두고 출발하여 1976년경 石川一家로 개칭,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2년 12월 石川一家는 假田會의 세력권인 福岡縣 大川市内로 진출을 하기 위해 동 시내에 산하조직 사무소를 개설했지만 채권징수의 분쟁을 시작으로, 1983년 9월 石川一家의 단원 2명이 노상에서 승차중인 浜田會 산하조직의 조장을 권총으로 발포하여 중상을 입혔다.

#### 너. 二代目俠道會

二代目俠道會는 廣島縣 尾道市에 주사무소를 두고 廣島縣과 5개 縣에 걸쳐 약 230명의 회원을 가진 폭력단이다.

二代目俠道會는 종전 후 高矯德次郎이 尾道市를 본거지로 결성한 바쿠토인 高矯組에 기원을 두고 출발하였으며, 高矯組의 해산 후 동회의 최고간부였던 森田幸吉이 1969년 1월 俠道會를 결성하였고, 1989년 11월 동생인

森田和雄이 회장이 되어 1990년 11월 二代目 俠道會로 개칭하였다.

二代目 俠道會가 관여하고 있는 폭주족과 巔市에 세력을 두고 있는 波谷組 관련 폭주족과의 싸움이 발단이 되어, 1990년 10월 二代目 俠道會의 폭력단원은 波谷組 산하조직의 단원 을 二代目 俠道會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 감금 폭행하여 중상을 입혔다.

#### 다. 二代目 太州會

二代目 太州會는 福岡縣 田川市에 주사무소를 두고 福岡縣을 세력권으로 약 150명의 단원을 가진 폭력단이다.

二代目 太州會는 1954년경 太田州春이 田春市의 단광을 운영하면서 불량배를 모아 결성한 太田그룹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후 太田組, 1973년 5월 太州會 등으로 개칭되었고, 1991년 12월 田中義人이 회장이 되어 二代目 太州會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5년 6월 太州會의 단원은 田川市에서의 세력다툼에서 대립관계였던 赤心會의 총장방에 침입하여 총장과 1명을 권총으로 살해하였다.

#### 4. 폭력단 활동의 국제화

이미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자리잡은 일본은 급속도로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조직범죄도 해외로 진출하여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집단이 되고 있다. 일본 폭력단의 해외 진출은 1975년을 전후하여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들의 해외활동 주목적은 마약이나 총기

등 금지품의 확보와 해외부동산 투자 등을 통한 이권의 폭을 넓히고 해외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폭력단은 무기의 규제가 심하지 않은 필리핀과 미국, 마약의 반입이 용이한 대만과 동남아 및 한국을 진출 무대로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해외여행 풍조여 편승하여 해외여행단으로 위장하여 자금 수출입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카바레를 비롯한 각종 유흥업소에 동남아 각국으로부터 온 여자들을 불법취업 시키는 일에도 개입하여 여권위조와 밀입국 및 불법취업 등을 일삼고 있다. 이들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폭력단은 총기와 각성제 등의 조달, 부동산 투자, 매춘, 공갈 등의 자금획득활동과 도피 은신처의 거점마련 등의 목적으로 해외진출을 기도하고 있다. 해외기업조사에서 폭력단의 해외진출동향에 관한 질문에서 23거점(태국 5거점, 미국 4거점, 대만 3거점)이 폭력단의 부당금품요구행위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현지에서의 폭력단 활동의 소문에 대한 질문에는 「현지의 일본요리점 등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24.0%), 「노동자의 일본 밀입국 활동을 하고 있다」(18.3%), 「마약과 총기조달을 행하고 있다」(15.0%), 「현지 범죄조직과 연계가 있다」(13.3%), 「현지 부동산 취득에 관여하고 있다」(12.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가별로는 태국, 필리핀, 브라질에서 거점 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또 폭력단은 외국인의 불법입국을 도와주는

브로커로서 암약함과 함께 외국인 여성의 매춘부, 호스텔스 알선, 외국인 남성의 건설현장, 공장의 노동자 알선 등을 행하고 그 노임을 가로채어 폭리를 얻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의 폭력단은 단지 해외에 진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의 범죄조직과 연대하여 범죄를 감행하기도 한다. 현지조직과 결합한 총기 제조, 마약 생산 및 운반, 여자들의 모집 그리고 현지 유흥업소의 운영과 단체 결성 등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1991년 12월 山口組의 부동산 취득을 위한 캐나다 불법송금, 1992년 6월 極東會의 호주 헤로인 불법소지 입국 기도사건, 1993년 山口組의 중국인 145명 일본 밀입국 기도사건 등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경향을 잘 알 수 있다.

#### IV. 일본경찰의 대책과 추이

##### 1. 폭력단 대책법 제정

###### 가. 제정 배경

민사개입폭력, 파벌투쟁 등 폭력단원의 부당한 행위에 의한 시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행위방지 등에 관한 법률」(91년 법률 제 77호)이 제 120회 일본국회에서 통과되어 9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폭력단 대책법은 종래의 단속에 의하여는

대처할 수가 없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공공연히 감행 하거나 독점화, 광역화를 추진하며 파벌투쟁을 반복하고 있는 국제화 시대의 폭력단에 대해 그러한 반사회적인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며, 폭력단을 법률상 처음으로 반사회적인 단체로 규정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폭력단 대책법으로 말미암아 종래의 형사법에 의한 폭력단의 단속외에 행정적 수단을 이용하여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행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효과적인 운용이 앞으로 폭력단 대책의 중요한 요체가 되었다.

일본과학경찰연구소에서는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0년간에 걸쳐 폭력단에 대해 연구 분석해 왔다. 연구분석한 주제는 첫째로 폭력단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 둘째로 도시와 폭력단의 관계 등 그 특징을 어떠한가, 셋째로 山口組, 住吉會와 같은 광역폭력단에 대해서는 어떤 계통을 가지고 분석해야 하는가 등이다. 또한 폭력단의 가입동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장래 예비단원으로서의 불량청소년들은 어떠한 가정환경을 갖고 있기에 폭력단에 가입하고 있는가, 폭력단의 하부조직원들은 두목에 의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름대로 행동반경을 갖고 있어 스스로 자급하고 있는가 등 그 생활구조와 경제활동의 기반에 관한 것들이다.

이를 통해 폭력단에서 이탈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가, 폭력단

을 어떻게 하면 해산 꾀멸시킬 수 있는가, 일견 해산된 듯 하면서 재편성되어 다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폭력단의 피해자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과학경찰연구소의 분석을 토대로 경찰청 형사국에서 독자적으로 폭력단 대책법의 초안을 만들고, 1990년 11월 25일에 경찰청 형사국 주재로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을 전공한 학자, 변호사, 토목관련 경제계 인사, 청소년문제 전문가 그리고 언론계 인사 등 15명이 모여 경찰청 형사국 안에 「폭력단 대책 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이 연구회에서는 경찰청 형사국에서 마련한 폭력단 대책법 초안에 대하여 4회에 걸쳐 매회 3시간 정도씩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1991년 2월 6일 「폭력단 대책 관련 입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일본정부는 이 의견서를 참고하여 정부안을 만든 후 국회에 상정하였고, 국회에서 약간의 토론을 거쳐 법이 성립되었다.

#### 나. 폭력단 대책법의 개요

(1)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폭력단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폭력단(지정폭력단)의 폭력단원(지정폭력단원)을 규제대상으로 한다.

폭력단이 되는 요건이 세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실질목적의 요건으로서 시민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을 악용해서 내가 어느 조직의 누구라고 하며 아무 이유없이 위력을 과시하여 돈을 갈취하는 단체여야 한다.

둘째는 범죄경력보유자의 요건으로서 폭력단의 간부나 폭력단원의 인원수 중에 전과자의 비율이 몇 %를 점하는가에 따라 폭력단을 지정한다. 예를 들어 도박죄나 각성제 단속법, 경마법, 경륜법 등에 위반한 자가 몇 %나 단체에 가입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폭력단을 지정하고 있다.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공안위원회 규칙 제4호)을 보면 단원이 100명인 단체의 경우 전과자가 9명이 있으면 지정할 수 있고, 500명인 단체에는 22명의 전과자, 1,000명의 단체인 경우는 42명의 전과자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셋째는 계층적 구조의 요건으로서 두목, 간부, 행동대원 등 지휘명령계통에 의해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두목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명령이나 지시가 곧 법률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지정폭력단원이 폭력단원의 위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다음 11개의 전형적인 부당한 금품 등의 요구행위(이하 '폭력단 요구행위'라 한다)를 금지한다. 공안위원회는 지정폭력단원이 폭력적 요구행위를 행하고 그 상대방의 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중지명령). 또 그 위반행위를 행한 폭력단원이 유사의 폭력적 요구행위를 반복하여 행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안위원회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재

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명할 수 있다 (재발방지명령).

가) 타인의 약점을 기화로 한 금품 등 요구 행위 : 일반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 댓가로서 합구료 등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나) 부당증여요구행위 : 사람이나 기업 등에 대하여 멋대로 금품 등의 증여를 요구하는 행위

다) 부당하청 등 요구행위 : 건설공사 등의 발주자 또는 수주자에 대하여 그 자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하청을 시키는 일, 물품을 납품하는 일, 노동의 제공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라) 미까지메 요구행위 : 세력권내의 음식점 등에 대하여 '이 부근에서 가게를 내려면 인사하러 오라'는 등 세력권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용인하는 보답으로 인사료, 미까지메료 등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마) 신변보호료 등 요구행위 : 세력권내의 음식점 등에 대하여 「보살펴 주겠다」, 「무슨 일이 있으면 교섭해 주겠다」 등 신변보호료를 요구하거나 가게 장식용 조화 등 물품의 구입과 손님에게 주는 물수건의 납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바) 고리채권징수행위 :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의 제한액을 초과하는 이자의 지불을 수반한 부당채권의 징수를 하는 행위

사) 부당채무면제 요구행위 : 「야쿠자에게 징수를 하다니 도리에 어긋난다」등 멋대로 채

무의 면제 또는 이행의 유예를 요구하는 행위

아) 부당대부요구행위 : 금전대부업자 이외의 일반인에 대하여 멋대로 대부를 요구하는 행위, 은행이나 사라깁(월급자 상대의 고리대금) 등의 금전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자가 거절함에도 금전의 대부를 요구하는 행위, 은행이나 사라깁 등의 금전대부업자에 대하여 무담보로 고액융자 등 통상의 융자조건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요구하는 행위

자) 부당토지이익행위 :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정당한 권리자인 거주자 또는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명도를 요구하는 행위

차) 부당타협개입행위 :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교통사고 등의 합의에 개입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카) 생트집을 잡은 금품 등 요구행위 : 구입한 상품이나 제공받은 역무에 하자가 없음에도 하자가 있다고 하든가, 교통사고 등 사고에 의한 손해가 없음에도 손해가 있다고 한다든가 또는 하자나 손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손해배상이나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3) 공안위원회는 폭력적 요구행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의 회복 등을 위한 원조를 행하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당요구에 의한 피해방지 원조를 한다.

(4) 공안위원회는 대립항쟁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일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무소를 지정폭력단의 활동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사무소의 사용제한)

(5) 지정폭력단원이 행한 폭력단체의 가입권유, 폭력단체에서의 탈퇴 방해, 사무소 등에 있어서 주민의 불안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행한다.

(6) 전국 및 도도부현마다 폭력단체추방 운동추진센터를 지정하고 폭력단체원의 활동에 의한 피해의 예방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간 공익활동의 촉진을 도모한다.

#### 다. 폭력단체 대책법의 개정

1993년 4월 폭력단체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3년 법률 제 41호)이 성립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인이 지정폭력단체원의 폭력적 요구행위를 행하는 현장에 입회하여 그 폭력적 요구행위를 도와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2) 폭력적 요구행위의 유형에 다음사항을 추가한다.

가)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건물에 대한 명도료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신설)

나) 주식회사 또는 그 관계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기주식의 매매 등을 요구하는 행위(신설)

다) 증권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신용거래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신설)

라) 가요쇼 기타 유흥업의 입장권이나 파티권 등의 구입을 요구하는 행위(신변보호료 등의 요구행위에 추가)

마) 어음의 할인, 매도담보 등의 방법에 의

하여 금전의 교부(급부유사행위) 또는 대부유사행위의 중개를 요구하는 행위(부당급부요구행위에 추가)

바) 권유를 받아 구입한 유가증권의 가격 하락 등에 의한 손실보상 명목으로 금품등을 요구하는 행위(생트집을 잡은 금품 등 요구행위에 추가)

(3) 폭력단체원의 폭력단체에서의 이탈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위(손가락 자르기의 강요, 소년에 대한 문신의 강요), 사람을 협박해서 관련자의 폭력단체 가입의 강요 등의 행위를 금한다.

(4) 폭력단체원의 폭력단체에서의 이탈 및 사회복지기를 촉진하기 위해 공안위원회는 폭력단체에서의 이탈을 희망하는 자와 기타 관련자를 대상으로 폭력단체 이탈과 사회경제활동에의 복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이탈자의 원호를 위한 활동을 행한다.

## 2. 폭력단체 종합대책 추진

국제화 시대의 폭력단체는 그 활동을 광역화시키고 악질화, 대형화 경향을 현저히 나타냄과 동시에 민사개입폭력 등의 자금획득활동을 다양화하여 가고 있어 폭력단체를 발본색원하고 폭력단체원으로 인한 부당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폭력단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폭력단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폭력단체와 폭력단체와 유사단체의

철저한 단속, 폭력단 대책법의 적정하고 효과적인 시행, 폭력단 배제활동의 적극적 추진 등을 3대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아울러 폭력단원의 사회복귀 촉진과 소년의 폭력단 가입 방지, 폭력단 범죄에 의한 피해자나 참고인 및 폭력단 배제활동 관계인에 대한 보복 위해행위 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한 보호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 가. 폭력단 범죄의 단속

일본경찰은 「폭력단원의 대량반복검거」, 「자금원범죄의 철저한 단속」, 「총기단속 철저」를 3대중점과제로 폭력단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 (1) 폭력단원의 대량반복검거

일본경찰은 폭력단조직의 핵심세력으로서 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두목과 간부를 중심으로 폭력단원의 대량반복검거를 철저히 하는 것과 함께 범행의 조직성을 규명하고 그 상습성 및 악질성을 입증함으로써 검거한 폭력단원에 대해 적정한 형벌이 가해지고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되도록 하고 있다.

##### 가) 폭력단원의 검거상황

1992년 3월 1일 폭력단 대책법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일본경찰은 각 법령을 적용하여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폭력단세력의 검거인원은 32,850명(전년 대비 5.1% 증가), 구성원의 검거인원은 16,306명(전년 대비 0.7% 증가) 보다 상회하여 8년만에 구성원의 검거인원이 전년보다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山口組, 稻川會, 住吉會 등 중

점대상 3단체에 대하여는 도도부현경찰이 연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폭력단세력의 검거인원은 23,861명(총 검거인원의 72.6%), 구성원의 검거인원은 11,647명을 넘었다. 특히 전국 최대의 광역폭력조직인 山口組는, 폭력단세력 15,051명, 구성원은 7,316명, 직계조장 22명을 각각 검거하여 과거 10년간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 나) 폭력단세력에 의한 범죄의 경향

1992년 폭력단세력에 의한 범죄의 경향은 살인·강도 등의 흉악범, 폭행·상해 등의 조폭범의 수는 감소한 반면 공갈·사기·협박 등의 검거인원은 전년에 비해 675명(9.5%)이나 증가했다.

죄종별 검거인원은, 각성제단속범위반이 6,627명(20.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해 4,995명(15.2%), 공갈 3,190명(9.7%), 도박 2,749명(8.4%), 공영경기범위반 2,337명(7.1%)의 순이다.

##### (2) 폭력단 자금획득활동의 단속

일본경찰은 폭력단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폭력단의 자금획득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폭력단의 비대한 수입에는 엄정과세가 효과적이므로 세무당국과의 연계 및 연락체제를 강화하고, 수사과정에서 폭력단의 부정소득을 인정한 경우 세무당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과세통보제도의 효과적 운용을 꾀하고 있다.

가) 전통적인 자금획득범죄에 대한 단속  
폭력단은 여전히 각성제의 밀매, 도박, 보

호세 징수 등 전통적인 자금획득활동을 활발히 행하고 있고, 1992년에는 전통적인 자금획득범죄중에 각성제단속법위반, 공갈, 도박 및 공영경기4법위반 등 4죄중에서 폭력단 세력의 검거인원의 45.4%를 점하는 14,903명을 검거하여 전년대비 592명(4.1%)이 증가하였다.

나) 민사개입폭력에 대한 단속

폭력단의 민사개입폭력에 대하여 일본경찰은 각종 법령을 적용하여 잠재적 범죄행위의 검거를 도모하고 비범죄사안에 대하여도 폭력법 대책법에 근거한 명령을 활용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민사개입폭력사안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다) 기업대상폭력에 대한 단속

폭력단의 기업대상폭력의 수법은 공사의 소음에 대한 보상료, 정치활동 찬조금, 사업자금 융자 등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기관지의 고액 구독, 업무과정상의 사소한 하자에 대한 시비 등 한층 교묘화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이러한 기업대상폭력에 대하여 1992년에는 상법 제497조(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공갈에 의한 총회꾼 등 40건 50명을 검거하고 공갈, 사회운동을 표방한 깡패 675건 694명을 검거하였다.

라) 폭력단 프론트기업의 자금획득활동 단속

폭력단 프론트기업에 대해 일본경찰은 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함과 아울러 경제거래과정상의 위법행위에 각종 법령을 적용하여 단속

함으로써 추진하여 폭력단의 자금공급루트를 차단함과 동시에 과세통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폭력단 자금원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1992년에 폭력단 프론트기업 관련범죄의 검거건수는 115건이며 관련된 기업수는 141개사에 이르고 있다. 업종별로는 토목건설업이 59개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동산업 22개사, 금융업 15개사, 서비스업 11개사로 이들 4개업종이 전체의 75.9%를 차지하고 있다. 죄종별로는 노동자과건사업법위반 19건, 사기 14건, 공갈 13건 등으로 형법범이 52건이며 특별법범이 63건이다.

(3) 총기, 약물사범 단속

가) 총기의 단속

폭력단에 의한 대립투쟁사건, 총기발포사건은 폭력단 대책법 시행 후 다소 진정되었으나 계속 발생은 하고 있고, 폭력단원에 의한 권총의 불법소지와 대립투쟁시 빈번한 발포는 상례화되고 있어 시민의 위협과 위협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일본경찰은 조직적인 정보수집활동, 효과적인 수색활동에 의한 총기적발에 주력하는 한편 세관과 해외수사기관과의 공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1992년 폭력단세력으로부터의 권총 압수수는 1,072정으로 폭력단 대책법 성립이후 폭력단 대립투쟁 등 과격한 행동을 자제함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118정(12.4%)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그 가운데 956정(89.2%)이 진짜권총으로 압수권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압수한 권총의 특징은 구소련제 총인 토카레프형 권총의 압수이다. 이 권총은 1988년에 처음으로 압수된 이래 매년 압수량이 증가하고 있고 과거 최다 압수되었던 1991년(265정)에 이어 1992년에도 211정(총압수 권총의 19.7%)이 압수되었으며 이러한 토카레프권총은 밀수입되어 폭력단에 입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부산 등을 중심으로 러시아 상인들을 통한 권총반입이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나) 약물의 단속

1992년 작성제사범 총검거인원은 15,062명인데, 이들 중 폭력단세력은 6,627명으로 전체의 4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폭력단세력으로부터 압수한 작성제는 118.5kg으로 전 압수량의 72.4%에 해당된다. 또한 위반양태에서 1992년 중 작성제의 영리양도사범으로 검거된 자의 75.2%가 폭력단세력이란 점에서 영리형 위반사범 중 폭력단 세력의 비율이 높은 것은 작성제가 여전히 폭력단의 커다란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경찰은 이와 같은 현상을 억제하고 마약특례법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와 기법을 활용하여 폭력단 등 밀수밀매조직의 발본색원에 중점을 둔 단속을 철저히 하는 한편, 일본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물이 해외에서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급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생산국, 반출국 등 관계국과 긴밀한 국제

수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4) 소년복지저해사범, 풍속관련사범의 단속

폭력단은 소년에 대한 신나 등의 밀매와 소년매춘과 같은 소년복지저해범죄(복지범)를 감행하여 일본경찰은 이러한 범죄에 관련된 폭력단의 단속에 부심하고 있다. 1992년에 복지범으로 검거된 폭력단세력은 1,347명으로 전년에 비해 230명(20.6%)이 증가하고 있고 복지범 검거인원은 13.6%를 차지하고 있다.

나. 폭력단 대책법 시행상황

(1) 명령 발동 상황

가) 중지명령

1992년 3월 1일 폭력단 대책법 시행후 1년간 총 332건의 중지명령이 발동되었다. 이를 형태별로 보면 자금획득활동인 폭력적 요구행위에 대한 것이 153건(46.1%), 탈퇴방해와 가입강요 178건(53.6%)이다. 폭력적 요구행위에 대한 명령 가운데 전통적인 자금획득활동인 인사료, 신변보호료의 요구행위에 대한 것이 79건(23.8%)이며 단체별로는 山口組에 대한 것이 189건으로 전체의 56.9%를 차지하고 있다.

나) 재발방지명령

폭력단 대책법 시행 후 1년간 東京都, 大阪府, 岩手縣, 旭川方面, 千葉縣, 梶玉縣의 각 공안위원회가 10건의 재발방지명령을 발하였다. 주로 인사료 요구행위 등 전통적 자금획득활동에 행한 것이 5건이며 단체별로는 山

口組가 3건, 住吉會가 4건이다.

(2) 원조

폭력단 대책법 시행 후 1년간 공안위원회는 5건의 폭력단 대책법에 기초한 원조조치를 시행한 결과 지정폭력단에 의한 폭력적 요구행위 상대방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다. 경찰의 폭력단 배제활동 전개

폭력단을 색출하고 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일본경찰은 단속과 함께 폭력단의 사회적 기반을 몰락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의 힘을 결집한 폭력단 배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일본경찰은 폭력단추방운동추진센터 운영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밀접한 연대를 통해 폭력단배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 暴排로라

‘폭배로라’라는 것은 폭력단의 부당한 행위에 의한 피해의 미연방지를 도모함과 함께 그 자금원을 봉쇄하기 위해 경찰관이 지역과 직종의 특성을 착안하여, 폭력단원의 부당요구행위가 행해지기 쉬운 공사장, 변화가 등 지역과 풍속영업 직종에 중점을 두어 그러한 지역과 직종의 영업소, 사업소를 개별로 방문하고, 관계자의 피해신고 전에 전체적으로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요구행위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 잠재피해를 인지하고 범인의 검거와 폭력단 대책법의 적용에 의한 규제조치를 행하는 일련의 실무상의 용어이다.

(2)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의 지정과 활동상황

가)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의 지정상황

도도부현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이하 ‘도도부현 센터’)는 1992년 3월에 廣島縣과 石川縣의 폭력단배제조직이 각각의 현공안위원회로부터 지정 받은 것을 시작으로 폭력단 대책법이 시행된 후 반년 남짓된 9월말까지 47개 도도부현 전체의 폭력단배제조직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았다. 전국적인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는 1992년 12월에 전국방범협회연합회가 국가공안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았다. 또한 도도부현센터는 모두 1993년 3월까지 전국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는 1993년 1월에 특정공익증진법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나) 도도부현센터의 활동상황

도도부현센터는 폭력추방상담위원으로 위촉 받은 변호사, 소년지도위원, 보호사, 전직경찰관 등이 폭력단에 관한 상담을 받고 각 위원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살려 상담자에 대해 필요한 조언과 원조를 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한 보호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센터는 이러한 상담 외에 폭력단으로부터 소년의 보호, 폭력단 탈퇴희망자에 대한 원조, 폭력단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사업을 통해 폭력단원의 부당행위로 인한 일반시민과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고 민간 폭력배제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한편 폭력단 대책법 시행 후 1년간, 약 8,300건의 상담이 이 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러한 상담은 폭력추방상담위원의 조언

은 물론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단체와의 연계활동에 의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다.

다) 도도부현센타의 과제

여론조사에서 도도부현센타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명칭과 활동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람이 11.1%, 「명칭만 알고 활동내용은 모른다」가 29.7%인 반면, 「명칭도 내용도 모른다」가 59.1%에 이르고 있다.

또 폭력단원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요구행위를 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경찰에 상담한다」가 81.4%인 반면, 「도도부현센타에 상담한다」는 29.2% 정도에 그치고 있다. 도도부현센타의 역할에 대한 응답에서는 「소년을 폭력단으로부터 지키는 활동」이 49.8%, 「폭력단이 실패와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이 39.3%, 「지역과 작업계 등으로 조직된 폭력단체활동조직의 지원활동」이 32.4%, 「사회복귀대책과 기타 지원활동」이 25.8%이다.

따라서 일본경찰은 도도부현센타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그 이용자를 늘리고 계속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3) 책임자 강습의 실시상황

책임자 강습은 폭력단 대책법을 근거로 대체적으로 사업소 등의 부당요구방지책임자에 대하여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나 그로부터 위탁 받은 도도부현센타가 폭력단 정세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행위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대한

강습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책임자 강습은 1992년 11월에 熊本에서 실시된 것을 시작으로 1993년 3월까지 전국 28개 都縣에서 실시되었고 폭력단원의 부당요구에 의해 피해를 입기 쉬운 빠징고영업과 금융,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약 11,700명의 부당요구방지책임자가 동강습을 수강했다. 1993년에도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약 77,500명의 책임자에 대한 강습이 실시되었다.

국내기업조사에서 부당요구방지책임자의 선임상황에 대한 질문에 동체도를 모른다는 회사가 35.9%에 달하여 이 제도의 홍보와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라. 폭력단원의 조직이탈 지원과 소년의 가입방지

폭력단의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하여는 폭력단원을 한 사람이라도 많이 조직으로부터 이탈시키고 동시에 폭력단에 새로이 가입하려고 하는 자 특히 그 다수를 점하는 소년의 폭력단 가입을 방지함으로써 폭력단의 인적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 이탈자 상황

폭력단 대책법 시행과 일본국민의 폭력배추방의식 고양 등에 의해 폭력단원의 부당한 자금획득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폭력단 조직내부의 동요가 보이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최근 폭력단원을 그만 두고 싶다는 상담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과 도도부현센타가 실시한 관련상담건수가 1991년에는 260건이었지만 1992년에는 935건으로 전년에 비해

7.5배가 늘어났다. 어느 현에서는 이러한 상담건수가 늘어나자 1992년 4월에 폭력단이탈자 상담전화로 설치하자 전국의 폭력단원과 가족 등으로부터 동년 12월까지 367건의 상담이 이루어져 폭력단원 중에서 조직이탈과 사회복지에 신중히 고려하는 자가 많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상담내용에서 회복곤란한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는 단지와 문신에 대한 고민을 호소하는 상담이 많은 점으로 미루어 단지와 문신이 사회복지의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의자조사에서 폭력단으로부터의 이탈의사를 묻은 데 대하여 이탈의사가 있는 자가 30%를 초과했고, 그들에게 이탈희망의 이유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가족을 생각해서」가 82.6%, 「이번에 검거되어서」가 64.4%, 「적당한 직업이 있을 때」가 56.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탈의사가 없는 자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두목과의 배신은 안된다」가 64.4%, 「자신에게는 이 세계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가 56.4%, 「이제는 인생을 재출발할 수 없다」가 49.8%를 차지하고 있다.

석방 후 어떠한 주위의 협력이 있으면 조직이탈이 용이한가라는 질문에는 「취직의 배려」(35.8%), 「절연하기 위한 위자료 이외의 원조」(30.5%), 「무엇이라도 서로 상담할 수 있는 상대」(24.4%)의 순으로 대답하고 있다.

## (2) 이탈지원시책의 추진

일본경찰은 폭력단원의 조직이탈을 원활히 하기 위해 폭력단 대책법에 근거하여 탈퇴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중지명령을 발하고 있다. 또한 폭력단원의 조직이탈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폭력단 이탈자에 대한 고용업종 확보를 위한 사업 등 폭력단원의 사회복지대책이 각 도도부현에서 추진되고 있다. 도도부현센타와 직업안정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가 연계하여 사회복지대책을 위한 조직결성이 시도되고 있다. 1993년 4월 말 현재 34개 도도부현에서 경찰, 직업안정기관, 도도부현센타, 협찬기업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대책협의회가 설립되었고, 약 2,000개사의 기업의 협찬을 받아 조직이탈부터 사회복지까지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폭력단원의 사회복지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원조가 필요하고 사회복지를 위한 효과도 있다」(68.4%), 「원조는 필요하지만 언제가는 폭력단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다」(17.1%), 「사회복귀를 위한 원조는 필요하지 않다」(4.8%)의 순으로 나타나 사회복지대책은 대체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여진다.

국내기업조사에서 폭력단원의 이탈자 고용에 대한 질문에 「취직에는 찬동하지만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63.8%를 점하고 있다.

## (3) 소년조원의 조직이탈과 폭력단 예비군인 소년의 가입방지

일본경찰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폭력단에 대한 인적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소년조원의 조직이탈과 소년의 폭력단 가입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년에게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폭력단 대책법에 의한 명령의 효과적 운용을 시도하고 있다.

#### 마. 보호대책의 철저

폭력단 대책법 시행 후 폭력단은 폭력단 대책법에 대한 대결자세를 강화함과 아울러 폭력단배제여론의 비등에 대한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 폭력단의 보도기관에 대한 공격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본경찰은 폭력단배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밖에 반폭력단의사를 명백히 하여 폭력단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안전확보를 중점과제로 삼고 이러한 사람들의 자택과 근무처에 대한 신변경계와 순찰을 강화하여 폭력단에 의한 피해발생을 방지하고자 각종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바. 일본국민의 폭력단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폭력단 종합대책은 현재까지 일본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여진다. 여론조사에서 폭력단의 단속과 배제에 대한 경찰이 대책에 대한 질문에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는 「어느 정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71.8%에 이르고 있다.

환락가조사에서는 경찰의 최근 폭력단 대책으로서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서 「연락, 상담

하기가 쉬워졌다」가 35.3%, 「폭력단 단속이 강화되었다」가 34.3%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국내기업조사에서 폭력단 대책법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33.6%)와 「다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57.2%)를 합하여 90.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락가조사에서의 동일 질문에 대한 응답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가 49.0%이고, 「이전과 별로 변하지 않고 거의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가 11.0%, 「폭력단에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범죄집단으로부터의 요구는 증가하였다」가 8.6%를 차지하고 있다.

### 3. 폭력단 대책법 및 폭력단 종합대책 추진 성과

#### 가. 시민, 기업 등의 의식과 폭력단배제 활동 전개

##### (1) 시민의 의식

##### 가) 폭력단에 관한 상담의 접수 현황

일본경찰은 시민으로부터 폭력단의 민사개입폭력에 대한 상담을 받아 이에 대한 조언과 지도를 하고 있다. 1992년에 전국적으로 24,567건의 상담을 접수받아 상담수는 전년에 비하여 3,583(17.1%)가 증가하였다. 상담내용은 금전대차에 관한 것이 가장 많고 매매대금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얽힌 일과 교통사고, 가옥임대차 등 부동산문제가 비교적 많았다.

##### 나) 폭력단에 대한 시민의 의식

여론조사 결과 폭력단이 없어지지 않는 원

인에 대한 질문에 「문제의 해결에 폭력단을 이용하고 있다」(49.3%), 「폭력단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알리지 않는 사람이 많다」(49.1%), 「폭력단의 요구에 응하여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47.9%)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폭력단을 이용하는 것과 부당요구행위에 응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 좋지 않은 일 이므로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각각 81.0%, 81.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 좋지 않은 것이지만 어쩔 수 없다」 또는 「 나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12.9%인데 그 이유에 대하여는 「 재판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41.4%), 「 경찰에 의뢰하면 여러 가지 조사를 받는 등 귀찮으므로」(37.5%), 「 경찰에 상담하면 일이 더 확대되므로」(31.4%), 「 변호사에 의뢰해도 돈이 들어가므로」(27.5%), 「 문제가 잘 해결되므로」(25.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폭력단배제활동에 대한 것인데 자기가 살고있는 곳에서 폭력단배제 주민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과 경찰로부터 증인으로 협력을 요청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 협력하고 싶다」가 각각 70%를 넘어 시민의 폭력단 배제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 협력하고 싶지 않다」고 한 사람의 이유는 「 폭력단의 미움을 사게 되고 또 보복이 두려운다」고 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보면 역시 폭력단에 대한 두려움과 보복에 대한 공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폭력단 대책으로서 어떤 것을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폭력단 자금원 범주의 단속, 권총 등 무기의 단속, 폭력단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2) 국민적인 폭력단 배제활동의 제고

최근 폭력단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강한 위기감을 배경으로 폭력단 대책법이 제정·시행됨을 계기로 일본국민의 폭력단배제의식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전국 47개 도도부현에서 폭력단배제활동을 하고 있는 도도부현센타가 발족하여 업무를 개시하였고, 지방공공단체의 폭력단 배제를 위한 각종 시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각종 업체에서도 폭력단과의 결별선언이 발표되고 지역주민의 폭력단사무소 건설 저지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 가) 국가적 차원의 폭력단배제활동

폭력단 대책법이 시행에 앞선 1992년 2월 27일의 사무차관회의에서 각성청간 연대강화, 관계업체의 폭력단배제활동의 추진 등을 결정하였고, 3월 28일 각의에서도 관방장관으로부터 이 결정사항을 확인하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다.

건설성은 이 결정에 따라 1986년부터 추진되어 온 건설업 및 부동산업으로부터의 폭력단 배제를 일층 강화하기 위해 1992년 4월 폭력단 대책법 시행에 따른 건설업 및 부동산업으로부터의 폭력단 배제에 관한 지침을 도도부현에 시달했다. 또한 6월에는 山口組 등 3단체가 지정폭력단으로 지정받은 것을 계기로 일본경찰청은 사무차관회의시 각 성에 대

한 폭력단 대책법의 철저한 주지와 폭력단 배제에 관한 관계업계의 지도강화를 요청했다.

나) 지방공공단체의 폭력단배제활동

지방의회의 잇따른 폭력단 배제결의와 함께 폭력단기금조례와 같은 폭력단 배제를 위한 조례의 제정, 공공공사시 폭력단 및 폭력단이 용기업의 배제 등 지방공공단체도 폭력단배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 경제계의 폭력단배제활동

폭력단 대책법의 성립을 전후하여 거품경제가 가라앉자 폭력단이 대기업 관련회사로부터 수백억엔에 달하는 거액의 용자를 받거나 일부 상장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기도 하였다. 일본경찰청은 1991년 6월 경단련에 대하여 기업의 폭력단 배제 촉구를, 8월에는 일본증권업협회에 대하여 금융권에서의 폭력단 배제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단련은 「사회질서와 안전에 악영향을 주는 단체의 활동에 관여하거나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행위는 단호히 배격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업행동헌장을 제정하였다. 또한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는 답신에서도 증권, 금융의 불공정 거래의 시정대책에 관하여 「조속히 폭력단의 부당한 개입을 배제하기 위한 자주적 대책이 확립되고, 자주 규제규칙에 삽입하는 등 업계내부의 철저한 활동을 기대한다」는 취지가 나타나 있다.

전국은행협동연합회도 금융거래에 있어서 폭력단의 부당한 개입 배제와 폭력단의 반사회적 활동을 조장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가

맹금융기관의 부장급을 구성원으로 하는 「폭력단개입배제특별위원회」 설치와 도도부현 각 지구에 「연락협의회」를 설립하였다. 증권업협회도 폭력단 대책법과 관련한 경찰청 형사국장 협조와 대장성 증권국장의 시달문에 부합하기 위하여 폭력단원 및 폭력단관계자와의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를 채택하는 등 경제계에서도 폭력단배제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계와 경찰청과의 긴밀한 연락목적으로 폭력단 대책연락협의회를 1992년 7월에 설치하였다.

라) 관련업계의 폭력단배제활동

유기업계의 폭력단에 의한 인사료, 경품매매 등을 거부하기로 한 결의를 시작으로 폭력단으로부터 연말에 장식품, 문송 등의 구입을 강요받고 있던 음식점업계도 금후 이러한 요구를 거부한다는 취지를 폭력단에 통보하였다. 또한 폭력단의 부당한 개입을 비교적 적게 받았던 운전대행업계도 폭력단배제조직이 결성되는 등 관련업계에서도 폭력단배제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마) 폭력단사무소의 건설저지 및 철거활동

폭력단사무소는 대립투쟁시 거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인근주민의 위협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어 폭력단 대책법 시행을 계기로 전국의 지역주민, 경찰, 관계행정기관이 일체가 되어 폭력단사무소 건설저지 및 철거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결과 1992년 중에 227개소의 폭력단사무소가 건설저지되거나 철거

되었다.

(3) 폭력단원 대상의 민사소송 동향

1991년에 폭력단사무소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과 동사무소의 집행관보관의 가처분이 인정된 것을 계기로, 三代目旭琉會의 내부분열에 따른 대립투쟁사건시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이 실행행위자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제소하고 아울러 소속폭력단의 조장에게도 민법상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폭력단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나 인근주민이 민사소송에 의해 권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92년에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山口組가 마약퇴치 명목으로 결성한 전국국토정화동맹의 사무소 건설예정지에 대한 사무소사용금지 가처분이 인정되었고, 구체적 피해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인격권에 근거한 사무소사용금지 취지의 본안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대립투쟁의 피해자와 사무소의 인근주민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재판시에도 주민측의 주장이 많이 인정되는 등 폭력단배제를 위한 국민의 법적 대응도 높아졌다.

나. 폭력단 정세의 변화

폭력단 대책법의 성립과 시행 후 폭력단의 조직, 활동상황에는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피의자조사에서 폭력단 대책법의 시행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에 관한 질문에서, 폭력단원들은 시민의 폭력단배제의식이 고조되어 있

고, 자금획득활동이 곤란하게 되었으며, 조직의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등의 상황을 들고 있다.

(1) 폭력단 조직상황의 변화

폭력단 세력은 약 90,600명으로 전년과 비교시 거의 변동이 없는데, 폭력단 구성원은 약 56,600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7,200명(11.3%)이 감소되었다. 이것은 일본경찰의 폭력단 대책으로 조직내부에 동요가 생기고 폭력단 구성원의 조직이탈이 진행되었으며 일부 폭력단에서는 조직방위없이 프론트기업 강화를 위해 구성원을 파문, 절연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 등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피의자조사에서 23.1%가 폭력단 대책법에 의해 소속한 조직으로부터 조원을 빼는 등 조원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중점대상 3단체의 구성원은 약 37,100명으로 전년과 비교시 약 1,400명(3.6%)이 감소했다. 이들 3단체의 폭력단 세력이 전체 폭력단 세력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64.5%로 전년의 61.6%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과점율의 성장율은 2.9%로 전년의 13.3%에 비해 둔화되었다.

또한 조직이 해산되거나 붕괴된 것은 158개(구성원 2,051명)로 전년과 비교시 20.6%(구성원수 43.4%) 증가하였다. 이 중 중점대상 3단체 산하조직의 해산은 104조직(구성원수 1,220명)이고 전체의 65.8%(구성원수 59.5%)를 차지한다.

(2) 폭력단 활동상황의 변화

가) 폭력단 자금획득활동의 변화

피의자조사에 의하면 폭력단원은 최근 1년간 시민과 기업 등으로부터의 자금획득활동이 상당히 곤란해지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또한 수입 변화에 대한 응답에서는 비합법적인 자금원이 없어졌다는 것이 9.7%, 비합법 자금원의 종류 또는 수입이 줄었다는 것이 각각 44.9%, 46.2%에 달하고 있다.

국내기업조사에서는 폭력단이나 사회운동요방단체로부터 금품의 요구 또는 계약체결의 강요를 받은 적이 있는 993개사에 최근 1년간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 「줄고 있다」가 50.9%, 완전히 없어졌다」가 27.0%이어서 이를 합하면 77.9%가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락가조사에서도 폭력단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 375개소를 대상으로 요구받은 시기에 관한 질문에 「최근 1년간에는 없으나 이전에는 있었다」가 75.7%, 「이전에는 없었으나 최근 1년간에 있었다」가 2.7%, 「이전에도 최근 1년간에도 있었다」가 19.5%로 나타났다.

나) 대립투쟁 및 총기발포사건의 감소

폭력단의 대립투쟁은 단지 대립관계에 있는 폭력단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선량한 시민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치안상 중대한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폭력단 대책법 성립 이전에는 매년 백수십회의 대립투쟁사건이 발생되었으나 동법의 성립 후인 1991년은 47회, 1992년에는 39회로

성립 전에 비하여 3분의 1 이하로 격감하였다.

또 1992년 폭력단원에 의한 총기발포사건이 174회로 전년과 비교하여 8건(4.4%)감소하였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6명(26.1%), 13명(28.9%)로 감소하였다.

다) 폭력단의 폭력단 대책법에 대한 움직임

폭력단은 지정폭력단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구성원이 폭력적 요구행위를 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사무소의 간판, 마크, 조원의 명찰을 없애거나 회사조직을 만들고 있다. 또한 「자선단체가 있어 폭력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폭력단 대책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폭력단 배제여론을 무마시키고 범죄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은폐하기 위해 대립투쟁을 삼가고 있다.

피의자조사에서 금후 5년간 폭력단 대책법이 줄 영향에 관한 질문에 가입자의 감소, 탈퇴자의 증가, 타직종으로의 전업 등이 예상되어 폭력단 대책법에 의해 폭력단 조직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회사조직이나 정치집단 혹은 비밀결사조직으로 전환하여 폭력단의 조직실태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도 진행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폭력단은 폭력단 대책법 시행 이후에도 폭력단 배제여론의 상징인 언론기관을 습격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등 아직도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으므로 폭력단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 성향에는 큰 변화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 4. 앞으로의 과제

법 시행 후 1년간 국민의 폭력단 배제여론이 고양되고 경찰의 폭력단 대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면도 있으나, 계속적인 폭력단 근절을 위하여 폭력단 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차후에도 이상과 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일본경찰은 생각한다.

##### 가. 폭력단 이용자에 대한 대책

국민 일부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단을 이용하는 자가 있고, 폭력단은 아직도 공공연하게 시민생활에 깊숙히 침투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폭력단 중추부에 직접 타격을 주어 폭력단의 최종적인 붕괴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토대를 없애 갈 필요가 있다고 한다.

##### 나. 폭력단의 부정수익대책

폭력단은 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풍부한 자금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폭력단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폭력단의 위법 또는 부당한 자금획득활동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규제해 나감과 동시에 이러한 부정수익에 대하여는 수익박탈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 다. 폭력단의 해외진출대책

폭력단은 최근 외국의 범죄조직과 연계를 도모하는 등 그 활동영역을 해외로 확장해 나가는 경향이 보이고, 해외의 범죄조직이 일본

에 진출을 기도하는 동향이 있어 조직범죄의 국제화 현상이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일본대사관, 일본기업의 해외거점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외국의 수사기관과 공조관계를 공고히 하여 폭력단의 해외활동을 봉쇄함과 함께 해외 범죄조직의 일본진출실태를 파악하여 단속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V. 결어

지금까지 일본 폭력조직의 실태와 일본경찰의 대책을 고찰하기 위해 일본 폭력단의 유래와 최근의 상황, 폭력단 대책법에 의한 지정 폭력단의 실태와 국제화 추세,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경찰의 대책과 향후과제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일본의 폭력단은 이탈리아계의 마피아와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계의 삼합회(Chinese Triad Society)와 함께 세계 3대 범죄조직의 하나로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일대와 미국 및 남미 등에서의 활동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국내의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의제적 혈연관계를 맺는 등 그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폭력단은 일본만이 가지는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위국가들에게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규모면이나 자금면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엄격한 의미의 국제적 조직범죄에 비길만한 범죄조직이나 활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지금까지의 소규모적 혹은 비조직적 폭력조직들이 점차 예상외의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갖추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조직 상호간의 대립투쟁 양상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제 범죄조직과의 연계 조짐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깡패’, ‘불량배’, ‘폭력배’ 등으로 불리는 폭력조직이 있었는데 1960년을 전후하여 ‘조직폭력’, ‘폭력조직’, ‘조직폭력배’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주로 유흥가를 중심으로 기생하면서 폭력을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5.16혁명 직후 강경조치에 의해 약화되었다가 70년대에 들어서 명동일대를 장악하여 폭력계의 패자로 군림하던 신상사파에 호남파가 도전을 하여 1975년 명동 사보이호텔에서 상호투쟁을 거쳐 이후 호남파가 군림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부터 소위 3대 패밀리(서방파, 조은파, OB파)가 형성되어 지하세계를 장악하였다.

5공화국 초기에는 ‘삼청교육’ 등 엄격한 사회악 일소조치로 폭력조직이 약화되었다가 80년대 중반에 들어 폭력조직의 구성원이 석방되기 시작하고 지방의 새로운 조직이 결성되어 서울로 진출하면서 조직간의 대립투쟁이 빈번해졌다. 80년대의 경제성장과 함께 유흥업도 급격히 성장하자 폭력조직도 이와 함께

공생하면서 자금력과 조직력을 확대해 나갔다. 80년대 후반에는 조금더 확대한 전국적 규모의 조직들이 결성되었고, 국제화와 개방화의 추세에 따라 외국의 범죄조직과의 연계 및 해외교민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90년대에 들어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폭력조직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약 1,266명의 조직폭력단원을 구속하여 다소 수그러드는 기미가 있었으나 90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이들이 형기를 마치고 약 70% 가량이 출소하여 조직을 재건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고 있어 80년대의 조직폭력이 번성할 위험이 되살아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전국의 폭력조직은 347개파 6,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경찰이 집중관리하고 있는 조직만 해도 200여개파 3,000명정도가 된다. 이들 조직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51개 조직 500여명, 경기 37개 조직 790여명, 대전 및 충남 28개 430여명, 부산 17개 207명, 광주 및 전남 15개 690여명, 대구 13개 199명 정도가 활동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문민정부의 출범이후 유흥업소와 향락산업이 퇴조를 보이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폭력조직의 자금원에 타격이 되고 있으리라 추정되지만 종래의 전통적인 유흥업소 갈취, 연예인 갈취, 도박장 개장 및 운영, 주류의 독점 공급, 영세업소 및 노점상 갈취 등에서 벗

어나 최근에는 재개발지역의 입찰이나 신축공사시의 하도급권, 무허가 운전교습, 약물 밀매, 노사분규 및 종교분규 개입, 보험사기, 외국인 불법취업 중개 등 새로운 형태의 자금조달활동이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폭력조직의 움직임에 대하여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기 이전에 대책을 수립하여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일본경찰의 폭력단 대책과 관련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로 폭력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법규를 제정하여 입법적인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물론 현행 「형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별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어 행위자 처벌에는 효과적인 법 운용을 통해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점차 지능화, 다양화해가는 조직범죄의 양태를 볼 때 행위자 뿐만 아니라 조직 자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불법적인 자금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만 규제가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규제법안의 제정과 함께 불법수익의 몰수제도와 자금추적을 위한 제도보완, 불법 또는 부당한 자금획득활동에 대한 단속,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방안, 폭력조직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수사기법의 한계 완화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로 수사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현재 경찰에 경찰청 단위와 지방경찰청 단위에 조

직폭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종합적인 대처에는 역부족인 상태라고 보여지며 일선 경찰서에서는 조직폭력에 대한 대처 역량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형조직에도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고 전국적인 광역범죄 조직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제가 시급히 갖추어져야 한다.

아울러 수사기법에 있어서도 일시적인 단속 위주에서 탈피하여 지속적이고 잠재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한 전문수사관이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 다른 분야와 함께 폭력조직의 수사에도 전문가를 육성하여 조직범죄 발생시 신속히 파견하여 수사의 효율성과 적실성을 기해야 한다.

셋째로 정확한 실태파악과 폭력조직에 대한 연구의 강화이다. 일선기관을 이용한 실태파악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므로 장기적인 과제로 선정하여 폭력조직에 대한 실태와 폭력조직원의 행태 및 생활, 자금원의 유형과 수법, 폭력조직의 대처에 대한 이론적 토대 마련 등이 서둘러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검찰 위주의 연구가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일부 이루어졌지만 폭력조직의 주위에서 항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의 현장감있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치안연구소의 발족과 함께 장기과제로 선정하여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을 기대한다.

넷째로 외국수사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와 해외 범죄정보수집의 체계화이다. 국제법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필자의 일본상급경찰간부 과정 연수중 일본과 동남아 각국의 경찰간부들과 국제공조수사체제에 관해 토론을 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외국어 능력 등의 문제는 차치하고 국가적 수사채널의 단일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인터폴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경찰에도 경찰청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마약문제의 경우 검찰이 대부분 관여하고 있고 심지어 안기부까지 뛰어들 실정이라서 이중 삼중의 수사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출입국관리업무도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인 국제공조의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 업무의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외에도 현재 폭력조직과 마약문제, 외국인 불법취업, 관광객의 폭증 등과 관련하여 동남아가 국제적인 범죄문제의 해결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경찰의 해외근무자는 홍콩에 그

치고 있어 동남아의 거점을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기타 교정처우의 개선과 폭력단 비호세력의 엄단, 범국민적인 의식개혁과 정치권의 반성 등이 아울러 추진되어야만 상기 대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폭력조직은 범죄의 온상이며 사회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처럼 전국가와 사회가 폭력단에 의해 병들고 난 후 대책을 세우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는 지금부터 꾸준히 학문적, 제도적, 행태적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비록 조직범죄가 '바퀴벌레'나 '암'에 비교되리만큼 완전한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사회 속에 상존하는 범죄성을 뛰어넘어 사회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며 병들게 하는 정도의 범죄는 강력히 그리고 지속적인 대처해야만 하며 그것이 범죄예방과 진압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사명이라 생각한다.



장 수 비 결

- ◇ 항상분주하게 일한다.
- ◇ 모든 일에 중용을 지킨다.
- ◇ 식사는 가볍고 간단하게 한다.
- ◇ 삶을 즐거운 것으로 느끼기 위해 노력한다.
-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 ◇ 근심, 불안 특히 죽음의 공포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
- ◇ 평정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